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487호
2019년 8월 2일
금요일

조 례

○ 조	례 제 1 6 3 0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조	례 제 1 6 3 1 호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6
○ 조	례 제 1 6 3 2 호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11
○ 조	례 제 1 6 3 3 호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17
○ 조	례 제 1 6 3 4 호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2
○ 조	례 제 1 6 3 5 호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조	례 제 1 6 3 6 호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조	례 제 1 6 3 7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규 칙

○ 규	칙 제 1 0 0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4
○ 규	칙 제 1 0 0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48
○ 규	칙 제 1 0 1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57
○ 규	칙 제 1 0 1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60
○ 규	칙 제 1 0 1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83

훈 령

○ 훈	령 제 3 6 4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187
○ 훈	령 제 3 6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 폐지규정	201

공 고

○ 공	고 제 1 3 5 7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3
○ 공	고 제 1 3 5 8 호 「기금 존속기한 정비(연장)를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2
○ 공	고 제 1 3 6 1 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219
○ 공	고 제 1 3 7 3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222
○ 공	고 제 1 3 7 4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25
○ 공	고 제 1 3 7 7 호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	234
○ 공	고 제 1 3 7 8 호 2019년 8월 취득세 공시송달	251
○ 공	고 제 1 3 8 1 호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 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3

고 시

○ 고	시 제 9 7 호 만수종합쇼팽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265
○ 고	시 제 9 8 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공고 및 게재	267
○ 고	시 제 9 9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272

기 타

범 양 아 파 트	
○ 주택재건축정비 제2019-2호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정정고시) 사업조합 고시	281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조례 제1630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59명”을 “1,10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38명”을 “1,08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059명”을 “1,10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102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097					
2급	1	1				
4급	6	4	1	1		
5급	64	33	2	7	2	20
6급 이하 계	1,026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19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정원 반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및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제2조)
 - 1,059명 ⇒ 1,102명 (증 4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038명 ⇒ 1,081명 (증 43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별표 3) 일부변경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059→1,102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054→1,097					
2급	1	1				
4급	6	4	1	1		
5급	64	33	2	7	2	20
6급 이하 계	983→1,026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조례 제1631호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의 범위) ①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산하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구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ㄱ

[별지 서식]

자 문 실 적 부

[고문 공인노무사 : ○○○]

연번	의뢰일	부서명 담당자	자문 형식	자 문 내 용	회신일	회 신 내 용	비고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우리 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문의 범위(제2조)
- 공인노무사의 위·해촉 및 임기(제3조 및 제4조)
- 자문의 절차(제5조)
- 자문에 대한 수당 지급(제6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조례 제1632호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방법 등)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

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남동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지급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남동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제13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1조 ~ 제3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 공익신고의 방법,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처리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 ~ 제8조)
-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9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제10조 ~ 제11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조례 제1633호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구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구정홍보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수탁기관, 남동구 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동구청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

지도자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남동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 관련 국장 및 과장과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시설 종사자

2. 남동구의회 의원

3. 그밖에 체육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구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구정홍보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제1조~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
-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 제8조)
-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9조~제1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조례 제1634호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구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구 대표로 참가하는 때만 해당된다.
3.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구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구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구 또는 구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공용차량 신청)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

②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4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담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제3조)
- 공용차량 신청에 관한 사항 (제4조)
-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
-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조례 제1635호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31조 규정에 의하여”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로, “관하여”를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과”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

라 한다)”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의해”를 “따라”로, “영하거나,”를 “설치·운영하거나, 그”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법인·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따른 운영위탁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노인복지법 제43조”를 “「노인복지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운영사항에 관하여”를 “운영사항을”로, “관하여”를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의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 주요내용

- 설치 및 인력기준 현행화 (제2조의2)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화 (제4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조례 제1636호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영자전거”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주민자전거의 운영)”을 “(공영자전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자전거”를 각각 “공영자전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전거대여소의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요금은 별표2와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공영자전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자전거 대여자의 준수사항) ① 자전거 반납 시 자전거대여소 관리자와 대여자가 함께 자전거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따른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③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때에는 동일 물품에 해당되는 실비에 대해 변

상책임을 진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자전거 이용자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전거보관소·정비소”를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전거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남동구의회 의원 2명

3.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4.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제9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기본 운영기간(시간)	비 고
운영기간	매년 1월~12월	
운영시간	09:00~17:00	
대여시간	2시간/1회(다인승 1시간/1회)	

1. 운영기간 및 시간은 남동구청장이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 대여 가능시간은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별표 2]

공영자전거 사용료(제9조의2제3항 관련)

구 분	자전거 종류	사용료	비 고
기본요금 (대여 후 120분까지)	1인용	2,000원	
	어린이용	1,000원	
	2인용	4,000원	
기본요금 (대여 후 60분까지)	다인승	5,000원	
초과요금	전 종류	30분당 500원 (최대 60분까지)	

1. 조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 대여신청자는 이용 예정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2. 제3항의 선납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대여시간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 회수 시 정산하고 신청자가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 및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한 정비로 현행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근거 마련(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규정 신설(제9조의5)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내용 반영 및 용어 정비(제2조제1호, 제2조 제5호,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제2조제4호, 제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조례 제1637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제6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을 “두 자녀는 30퍼센트 감면, 세 자녀 이상은 50퍼센트 감면(”으로, “아이모아 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경우 : 50퍼센트 감면”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경우)”로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며,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④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⑧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르며,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⑨ 구청장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5(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7조의2(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제12조의4를 준용한다.

제17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며,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제2조)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제5조)
-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의4, 제17조의2)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의5, 제17조의3)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규칙 제10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남동구”로, “실·과장”을 “실·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보좌하고”를 “보조하고”로, “보좌하며”를 “보조하며”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11조 중 “[별표 2]”을 “별표 2”로 한다.

제13조 중 “[별표 2-1]”을 “별표 2-1”로 한다.

제14조 중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표 4]”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1 중 기획예산실란의 제16호부터 제59호를 각각 제17호부터 제60호까지로 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방행정 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무과란의 제33호부터 제56호를 각각 제35호부터 제58호까지로 하고 제33호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총괄

34. 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별표 1 중 세입징수과란의 제23호부터 제36호를 각각 제24호부터 제37호까지로 하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에 관한 사무

별표 1 중 환경보건과란의 제37호 및 제38호를 각각 제38호 및 제39호까지로 하고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1 중 복지정책과란의 제14호부터 제21호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복지 총괄

별표 1 중 공동주택과란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임대 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도시관리과란의 제16호부터 제19호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건강증진과란의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5. 치매안심센터 운영

별표 4 중 동행정복지센터란의 제7호부터 제56호를 각각 제8호부터 제57호까지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9년도 남동구 공무원 정원증원에 따라 신규사무에 따른 사무분장을 정비하여 안정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규사무 사무분장

부서별	분장사무	비고
기획예산실	· 지방행정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총무과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총괄 · 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세입징수과	·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에 관한 사무	
환경보전과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복지정책과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복지 총괄	
공동주택과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업무 추가
도시관리과	·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 치매상담센터 운영 → 치매안심센터 운영	용어변경
동	· 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구본청 사무분장 정비 : 별표 1
- 보건소 사무분장 정비 : 별표 2
- 동 사무분장 정비 : 별표 4
- 남동구 자치법규(규칙) 제명 통일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규칙 제10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제3조의5에 따라”로, “제2조 1항”을 “제2조제1항”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관별·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1,102	653	21	93	19	316
정무직 계	1	1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097	648	21	93	19	316
2급 소계	1	1				
지방이사관	1	1				
4급 소계	6	4	1	1	0	0
지방서기관	4	3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64	33	2	7	2	20
행정	28	14	2			12
녹지	1	1				
의무	3			3		
시설	4	4				
행정·사회복지	9	5			1	3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8	5			1	2
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농업·해양수산·기술·간호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6급 소계	273	161	8	21	5	78
행정	103	42	5		2	54
세무	13	13				
사회복지	3	2			1	
숙 기	1		1			
공업	2	2				
녹지	2	2				
보건	2			2		
환경	4	4				
시설	18	18				
전산	1	1				
방송통신	1	1				
운전	4	3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3				
행정·세무	10	10				
행정·사회복지	41	16	1			24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6	5			1	
행정·녹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4	3			1	
행정·시설	16	16				
행정·전산	1	1				
행정·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3	3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8			8		
의료기술·간호	3			3		
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숙기·사무운영	1		1			
행정·농업·수의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7급 소계	394	249	8	32	6	99
행 정	147	86	3		3	55
세 무	28	28				
사회복지	54	18				36
숙 기	2		2			
공 업	6	5	1			
농 업	3	3				
녹 지	8	8				
수 의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7			7		
의료기술	1			1		
간 호	4			4		
간호조무	1			1		
환 경	12	12				
시 설	40	40				
전 산	7	7				
방송통신	3	3				
운 전	12	5	1		1	5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	4	2	1			1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3	3				
행정·간호	1	1				
행정·시설	6	6				
행정·전산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2			1	
녹지·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4			4		
보건·간호	10			10		
의료기술·간호	5			5		
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8급 소계	296	162	2	29	6	97
행정	120	73	2		1	44
세무	5	4			1	
사회복지	65	23			1	41
사 서	3	3				
공업	7	7				
농업	3	3				
녹 지	5	4			1	
보건	12	1		11		
의료기술	3			3		

간호	11			11		
환경	4	3			1	
시설	21	21				
전 산	3	3				
방송통신	3	3				
운 전	5			1		4
사무운영	5	2				3
전기운영	0	0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6	1				5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2	2				
행정·전산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2	1			1	
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9급 소계	62	37	0	3	0	22
행정	29	14				15
세무	1	1				
사회복지	5	1		1		3
사 서	3	3				
공 업	1	1				
녹 지	1	1				
보 건	2			2		
시 설	10	10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5	1				4
행정·사서	0					
행정·녹지	1	1				
행정·방재안전	2	2				
연구직계	1	1				
기록연구사	1	1				
일반·별 정직 계	4	4	0	0		0
5급(상당) 소계	1	1	0	0		0
비서실장	1	1				
6급(상당) 소계	1	1	0	0		0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0	0		0
비서	1	1				
8급(상당) 소계	1	1	0	0		0
비서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의거 우리 구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1] 기관별·직급별 정원 일부개정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현황

구분	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현행	1,059	622	21	83	19	314
개정	1,102	653	21	93	19	316
증감	43	31		10		2

- 직급별 조정현황

구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소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현행	1,059	1	1,054	7	64	262	379	284	57	1	4
개정	1,102	1	1,097	7	64	273	394	296	62	1	4
증감	43		43			11	15	12	5		

- 남동구 자치법규(규칙) 제명 통일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규칙 제10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임

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사정책 및 인
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남
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인사정책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사항 중 특히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
는다.

③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3
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2를 따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
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진보제한자의 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 승진임용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시험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라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 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민간전문가 중 4분의 1 이상은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1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 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4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 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5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5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 예정 직급
대학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 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자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의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의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제4장 신규임용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 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 후보자를 임용 한 경우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상·하한액 범위에서 정하며,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직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2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승진임용

제27조(기본원칙)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위직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의 균형 있는 관리와 기관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각 기관 간의 상호 교류, 승진인원의 배정 등 필요한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

제28조(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승진심의 등) ①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영 제30조제1항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30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1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32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가산점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직렬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5점
2.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25점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 23과 같다.

제6장 전보 및 인사교류 등

제34조(순환보직) 공무원을 전보할 때에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1. 공무원의 전보는 해당직위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영 제27조에 따른다.
2.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에 보직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4.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5. 신체 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제35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중인 사람
2.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 또는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제36조(근무기간의 계산) 제34조에 따른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근무기간은 보직 발령일부터 계산하되, 6개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파견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직제개정 등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부서의 관장 업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과 같다.

제38조(구 및 동간의 인사교류) 구청장은 구 및 동간의 순환전보를 통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한다.

제39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구청장은 격무·기피업무 등 구청장이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

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40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그 업무에 경험이 있는 (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하되,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7장 교육

제41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각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태만 등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게는 이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각 교육과정 수료자는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임용기준 및 비위자 관리

제43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임용제한)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45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 처리로 인한 경고, 훈계 또는 타 직위로 전보된 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연구관 · 연구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수의연구	수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연구관 · 연구사
직렬	직류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물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공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 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 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 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
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
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2. 삭제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
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
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
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
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 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 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 수리, 건설기계정비, 기계장치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 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포니셔 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 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세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 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 파괴검사
	야 금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축 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 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학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설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평가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감정평가사(3)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무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자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족인공수정사	
수의	수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8]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직류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화 학	기술사(화학, 세라믹, 식품)	기사(화학약품제조, 화학,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계급	직류	연구관	연구사
농업연구	축산	축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 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 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 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 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업 조경	임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 호, 입산가공, 토양환경)
		조		
수의연구	수의	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학	의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 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 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 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 (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렬	직류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운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상,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가공,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산기, 전자계산기조작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물보호, 입산가공, 조정)	입산가공, 조정)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입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입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 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계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학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학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교통, 광해방지)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지적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적 및 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정)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정)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정)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정)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10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1]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 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 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응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 다 군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2]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12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13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1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파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 산 비 율 : 원자 료조종감독자, 핵 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 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원 자로조종사, 핵연 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용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잡업	기사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화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용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용적용: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산물 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건	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 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적용: 영 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응급구 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 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 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기사1급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기사2급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기 능 장 : 산림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기 능 장 : 산림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경,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설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전자통신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 섬유, 생사,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염색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학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업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선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조 경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자원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약 학	-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4]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2급·연구관 지도관	3급·연구관 지도관	4급·연구관 지도관	5급·연구관 지도관	6급·연구사 지도사	7급·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직무분야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경 감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준 위 사	상 중 사	하 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 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 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 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학 위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5]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입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야 금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녹 지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입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입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잡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산 물 집 사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축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전송기술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중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약 제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중·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입산가공학, 잡업, 잡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6]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에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7]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에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8]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1.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계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계운전		
	일반전기		
	전자		
	금속		
	야금		
	섬유		
	화학		
	물리		
농업연구	작물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지도	농업	
		농업환경	농업
	농화학		
	농촌지도	농업	
		작물보호	농업
	식물검역		
	농촌지도	농업	
		농업경영	농업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업	잠업
			잠업
	원예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지도	농업
원예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사회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축산
	농공	공업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업기계
녹지연구	임업	임업	전직류
수의연구	조경	농촌지도	임업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의	수의
			환경
			해양수산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양식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수산중식
			어촌지도
			어촌
	수산가공	해양수산	어촌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보건연구	의학	해양수산	어촌지도
			어촌
			일반수산
	약학	해양수산	어촌
			일반수산
			어촌
환경연구	공중보건	보건	일반의무
			치위
시설연구	토목	약무	약무
			약계
			약제
환경연구	환경	식품위생	보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시설연구	건축	시설	전직류
			일반토목
			농업토목

2. 지도직공무원

지 직	도 직	직 류	기 직	술 직	직 류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농 업 경 영	
	농 업 경 영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농 지	전 직	류
	임 업	임 업	농 지 연 구	임 업	
				조 경	
	잠 업	잠 업	농 업	잠 업	
			농 업 연 구	잠 업 곤 충	
	원 예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농 업	축 산	
	축 산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수 의	수 의	
어 촌 지 도	어 촌	어 촌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일 반 수 산	
			해 양 수 산	수 산 제 조	
				수 산 중 식	
				어 로	
				수 산 물 검 사	
			해 양 수 산 연 구	전 직	류

[별표 19]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 고 : [별표2], [별표2의2]는 각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20]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채직한 기간	“나급”으로 채직한 기간	“다급”으로 채직한 기간	“라급”으로 채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채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채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채직한 기간	“나급”으로 채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채직한 기간	“6호”로 채직한 기간	“7호”로 채직한 기간	“8호”로 채직한 기간	“9호”로 채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채직한 기간	“나급”으로 채직한 기간	“다급”으로 채직한 기간	“라급”으로 채직한 기간	“마급”으로 채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지방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 공무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대학 : 11-16호봉	대학 : 7-10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19-25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별표 21]

경임 예정직급 기준표

임용예정 계급		2 급 · 연구관· 지 도 관	3 급 · 연구관· 지 도 관	4 급 · 연구관· 지 도 관	5 급 · 연구관· 지 도 관	6 급 · 연구사· 지 도 사	7 급 · 연구사· 지 도 사	8 급	9 급
교 육 공 무 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 교 및 동부설연 교소의 교원 포 합)	교 수	교 수 부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조 교 수 전임강사 (2년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6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2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1 호 봉 이 하 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		이 사 (3년이상)	이 사	부 장	과 장 (차 장)	계 장 (대리)	평 사 원 (3년이상)	평 사 원	

[별표 22]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가. 5급부터 9급까지

직렬 \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 행정5급중 6급채직시 전산직렬	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계,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전기응용,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소음진동, 산업계측제어)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교통,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에너지관리)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소음진동)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영사, 교통,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음진동, 철도운송산업기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일반전기)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방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품질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소방, 전기안전,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분야>,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품질경영, 승강기, 사무자동화,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분야>, 에너지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직렬 \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품질관리,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용접, 품질경영,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장(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산업기사(금속재료, 재료조직평가,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품질경영,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한복,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 업 (일반화학) (가 스)	기술사(화학, 품질관리, 자원관리, 화학류관리, 세라믹, 식품, 가스, 화학안전)	기사(화학,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품질경영, 화학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화학류제조, 위험물, 품질경영, 화학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학류관리, 광해방지, 지질 및 지반, 해양)	기사(광산보안, 화학류관리, 광해방지, 응용지질,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산업기사(광산보안, 화학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식품)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생물공학, 식품, 식물보호)	산업기사(유기농업, 종자, 식품, 식물보호)
농 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농화학)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산림, 조경,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자연환경관리)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시설원예, 종자, 화훼장식,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자연생태복원, 임업종묘,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해양)	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수산양식, 어로, 해양조사, 식품,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수산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일반기계)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가공)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보 건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식품위생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방사선관리)	기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응급구조사 1급, 의자보조기기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의공	응급구조사 2급, 의공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기상예보,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 수자원 개발,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해양, 조경, 농화학,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안전, 화공,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관리, 온실가스관리, 기상, 기상감정,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해양환경,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생물분류, 광해방지)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농림토양평가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해양조사,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항공공감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 개발,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항만 및 해안, 조경, 지질 및 지반) 건축사	기사(교통, 도시계획, 건축, 토목,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응용지질)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교통, 건축, 건축일반시공, 토목,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일반토목)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광해방지)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광해방지)	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건설안전)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측 지)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교통시설)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적,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조경,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기사(교통, 도시계획,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응용지질, 콘크리트, 응용지질)	산업기사(교통,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건설안전, 콘크리트)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자통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전자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위 생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기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건설안전)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전자전파통신, 정보통신,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전자전파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기운영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용융,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관리, 소방, 전기안전)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계운영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 <기계분야>, 승강기, 용접)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배관, 판금제관, 농업기계, 용접,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 <기계분야>,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품질관리, 화약류관리, 세라믹, 식품,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가스운영			기술사(화공,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화약류관리, 가스)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산림향해운영 산림기관운영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가공)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산림, 조경, 농화학, 종자, 축산, 식품)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종자, 축산,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축산,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식품)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위생관리) 임상관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나. 연구사

직렬	계급	연구사
공업연구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계, 차량, 금형,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화공, 섬유, 의류, 건축전기설비, 방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공장관리, 포장, 품질관리, 제품디자인, 지질 및 지반, 해양,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식품,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용접,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섬유, 의류,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이드, 포장, 품질경영,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컬러리스트, 응용지질,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식품,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반도체 설계)
농업연구		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조정, 섬유, 의류,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조정, 메카트로닉스, 생물공학, 섬유, 의류, 식품, 식물보호,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위생사, 영양사, 평상교육사 12급
농업연구 (잡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생물공학,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품질관리, 농어업토목,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조정, 도시계획,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금형, 용접,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사(품질경영, 토목, 조정, 도시계획,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용접,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유기농업, 축산, 생물공학)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산림,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조정)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시설원예, 종자, 조정, 화훼장식)
해양수산연구		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물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생물공학,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직렬	계급	연구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해양, 조정, 농화학,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안전, 기상예보, 화공)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기상,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해양환경, 조정,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생물분류)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정,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정,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다.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축산, 산림, 농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조정, 도시계획,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금형, 용접, 섬유, 의류, 식품,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교통)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자동차정비,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용접, 섬유, 의류,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식품,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토양환경, 화해장식, 농화학, 식물보호, 정밀측정, 승강기, 교통)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 3.27. 이전 취득.)
어촌지도	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관리, 해양환경, 수산제조, 수질환경, 해양자원개발)

비고 : 1.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을 평정할 수 없다.

2. 명칭변경, 통합,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자격증은 정수사업소 근무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구분	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별표 23]

언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

언어	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성적	가산점
영어	TOEFL	CBT	197점 이상	0.25
		IBT	71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0.25
그 밖의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비고 :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주민등록 번호												수입증지 붙이는 곳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장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				계회번		③ 응시연도 및 회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시번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㉑		㉒
④ 주소						(사진부착)			
⑤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폰 :								
⑥ 병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격면허				⑨ 상 별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군·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물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합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회 망 지 역 … 회망지역은 제1회망, 제2회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출 신학 교 명	⑧ 특기	⑨ 병역 필 미 필	⑩ 희망 기관	⑪ 신원조사			⑫ 추 천			⑬ 임 용			비 고
										의 리	회 보	송 부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연 월 일	직 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20 . . .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
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 용 자 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 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관계서류 부

직 인 남 동 구 청 장

1.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용연월일	일용직급	임용직위	비 고

2.임용불응자 명단

등 록 번 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요구					직류		
						계급	급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직명		
	한자					직류		
							계급	급
⑦ 선 택 과 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 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 시행 제 회 1 차 합격 응시번호			
	나.							
⑩ 자 격 · 면 허 훈 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상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계 인			
년 월 일 (인) 남 동 구 청 장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 . .	. . .	. . .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인	(사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 는 것과 동일한 원 판, 동일한 규격		
년 시행 제 회 시험		(급 류)						
임용예정직명 :								
성 명 :								
시험요구기관명 :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작 성 요 령

-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란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 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 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 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만년필 또는 볼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시험 당일에는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성 명		성별	남,여	생년 월일	년 월 일	주소			
시험구분	()직 제 회 9급공무원 시험				합격일자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학 력					경 력				
임용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기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직여부		
	년 월 일			년월일 월간 년월일	월		일자:년월일 직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	배치부서								
	수 습 계 획 기 간	... ~ ... (일간)							
	실 지 수 습 기 간	... ~ ... (일간)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보 통	
			미 흡	
		답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감 재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		성명	(한글)
용 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비 위 관 계 기 록 카 드

○ 성 명 :
○ 생년월일 :

○비위내용기록(경고, 훈계 등 비위내용)

조치당시 소 속 및 직 위	비 위 내 용	적발기관	조 치 사 항		기록자 날 인
			년 월 일	처 분	

* 본 카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개인정보 보호 및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 등 반영을 통하여 현행 규칙을 보완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사항 보완(제3조 ~ 제6조)
- 임용시험 블라인드 채용 표준안 반영(제6조, 별지 제1호서식)
- 신규임용에 관한사항 신설(제25조 ~ 제26조)
- 승진임용에 관한사항 신설(제27조 ~ 제29조)
- 전보 및 인사교류 등 관한사항 신설(제34조 ~ 제40조)
- 교육, 임용기준 등 관한사항 신설(제41조 ~ 제45조)
- 그 밖의 운영 상 미비사항, 별표 및 별지 등 수정 및 보완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규칙 제10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재산관리업무주관부서장”을 “재산관리업무 총괄 전담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를 “재산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산관리관에 대하여”를 각각 “재산관리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총괄사무 부서장”을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를 “제4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에”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를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로 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제63조 규정에 의한”을 “제63조에 따른”으로, “서식에 의한”을 “서식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가 있는 때”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를 “밋”으로 한다.

제1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교환함에 있어서 그 교환차액은 재산인도전”을 “교환할 때 교환차액은 재산 인도 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의”를 “감정평가업자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를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한”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 및 청·소의 장”을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재산관리대장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기업용재산

라. 보존용재산

3. 일반재산관리대장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을 “재산을 법 제46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1조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 주무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로 한다.

제25조 중 “업무주관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한다.

제27조 중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3조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작성 대체하거나 부가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중 “주무과”를 “총괄 전담부서”로, “제11조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2조 중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한다.

제33조 중 “제61조 규정에 의한”을 “제61조에 따른”으로, “서식에 의하고”를 “서식으로 하고”로,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한다.

제34조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에 따른”으로,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6조 중 “구유재산에 관하여”를 “구유재산과 관련하여”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20호의1 서식, 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0호의3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을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본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본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

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여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9호 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남동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제3조 대부료는 연액 금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 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앞에서 말한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을”은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

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통씩 갖는다.

년 월 일

임대자(갑) 남동구청장 ○○○ (인)

임차자(을) (인)

주 :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 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간에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

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도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
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의의를 “갑”에게 제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 또는 권리변경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남동구청장 (인)

위 매수자(을)

주소 · 성명

[별지 제14호 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소

성명 귀하

남동구청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 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앞면)

변 상 금 부 과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불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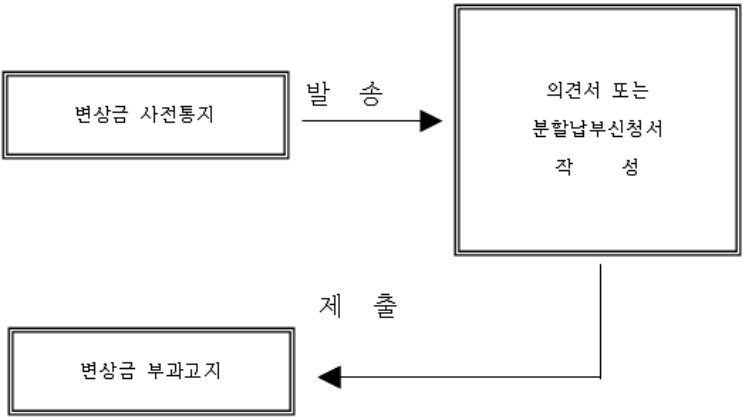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귀 하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별지 제20호의2 서식]

변 상 금 부 과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건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건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의3 서식]

공유재산 [()사 용 료 ()변 상 금 ()대 부 료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년 분납		
					()년 분납		
					()년 분납		
					()년 분납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 제37조, 제62조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변상금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대부료 ()매각대금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별지 제25호 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남동구청장 귀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와 제명 통일 등(제1조, 제2조제1항, 제3항, 제12조)
- 사용 용어의 통일(제2조, 제4조, 제24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제2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제3조 등)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규칙 제10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남동구 물
품관리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실·단·과장”을
“실·담당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실·단·과물품관리업무담당”

을 “실·담당관·과물품관리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남동
공단지원사업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를 “-”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보건소·남동공단지원사업소·동은 의회사무국
장·보건소장·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동장”을 “의회·보건소·사업소·동은
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실·단·과장”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 주관 실·단·과장”을 “따라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를 “별지 제9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실·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
로, “실·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보건소·남동공단지원사업소·동”을 “의회

· 보건소·사업소·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이하”를 각각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남동공단 지원사업소·동”을 “사업소·동”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동장”을 “사업소장·동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체계정비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제1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조문 체계정비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훈 령

남동구 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훈령 제364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각 부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653	
기 획 예산실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4, 행정·시설1
		7 급	8	행정7, 전산1
소통협력 담당관	계		9	
	일반직	소 계	9	
		5 급	1	행정1
		6 급	3	행정1,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 급	2	행정2
감사실	계		10	
	일반직	소 계	10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행정·세무·사회복지2
		7 급	5	행정4, 행정·사회복지·시설1
홍 보 미디어실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1, 전산1, 방송통신1, 행정·전산1
		7 급	8	전산4, 방송통신2, 전화상담운영1, 행정·전산1
총무과	계		31	
	정무직	-	1	(구청장)
	일반직	소 계	26	
		2 급	1	지방이사관1
		4 급	1	지방서기관1
		5 급	1	행정1
		6 급	6	행정6
		7 급	10	행정9, 전산1
		8 급	6	행정6
		9 급	1	행정1

	별정직	소 계	4	
		5 급	1	비서실장1
		6 급	1	비서요원1
		7 급	1	비서요원1
		8 급	1	비서요원1
안 전 총괄과	계		28	
	일반직	소 계	28	
		5 급	1	행정·시설1
		6 급	6	공업1, 행정·공업2, 행정·시설2, 행정·방송통신1
		7 급	7	행정2, 공업1, 시설2, 방송통신1, 공업·시설1
		8 급	9	행정1, 공업2, 시설3, 방송통신2, 행정·방재안전1
		9 급	5	행정2, 방송통신1, 행정·방재안전2
문화관광 체육과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시설1
		7 급	6	행정3, 시설1, 녹지·시설2
		8 급	3	행정2, 시설1
		9 급	1	행정1
민원 봉사과	계		20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4
		7 급	6	행정5, 사무운영1
		8 급	7	행정7
		9 급	1	행정1
	연구직	6 급	1	기록연구사1
청소과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환경1
		6 급	5	행정1, 환경2, 행정·환경2
		7 급	5	행정3, 환경2
		8 급	5	행정3, 환경2
토지 정보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시설1
		6 급	5	시설3, 행정·시설2
		7 급	9	시설8, 행정·시설1
		8 급	2	시설2
		9 급	2	시설2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재무과	계		28	
	일반직	소 계	28	
		4 급	1	지방서기관1
		5 급	1	행정1
		6 급	8	운전3, 기계운영1, 행정·세무2, 행정·시설2
		7 급	12	행정4, 공업2, 시설2, 운전3, 행정·세무1
		8 급	6	행정4, 공업1, 시설1
세무과	계		28	
	일반직	소 계	28	
		5 급	1	행정 1
		6 급	8	세무6, 행정·세무2
		7 급	16	세무14, 행정·세무2
		8 급	3	세무2, 행정·세무1
세 입 징수과	계		30	
	일반직	소 계	30	
		5 급	1	행정1
		6 급	9	세무7, 행정·세무2
		7 급	15	세무13, 행정·세무2
		8 급	3	세무2, 행정·세무1
		9 급	2	세무1, 행정·세무1
일자리 정책과	계		14	
	일반직	소 계	14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4
		7 급	6	행정6
		8 급	3	행정3
기 업 지원과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 급	1	행정·공업1
		6 급	4	행정2, 공업·시설2
		7 급	5	행정2, 공업2, 공업·시설1
		8 급	2	행정2
		9 급	1	행정1

구분	직종	계급	정원	직급별내역
생활 경제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공업1, 행정·공업1
		7급	4	행정2, 행정·시설1, 행정·공업1
		8급	4	행정2, 공업2
		9급	1	공업1
농축 수산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1
		6급	3	행정·해양수산1, 행정·농업·수의2
		7급	8	행정1, 농업3, 수의2, 해양수산2
		8급	4	농업3, 행정·해양수산1
환경 보전과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환경1
		6급	7	환경2, 행정·환경1, 공업·환경3, 사무운영1
		7급	12	행정1, 환경10, 공업·환경1
		8급	2	환경1, 공업·환경1
복지 정책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4급	1	지방서기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1, 행정·사회복지4
		7급	7	행정3, 사회복지4
		8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9급	1	행정·사회복지1
사회 보장과	계		35	
	일반직	소계	35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급	13	행정6, 사회복지7
		8급	17	행정6, 사회복지11

구분	직종	계급	정원	직급별내역
노인 장애인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급	7	행정3, 사회복지3, 시설1
		8급	8	행정5, 사회복지3
가정 복지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3
		7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간호1
		8급	5	행정2, 사회복지2, 보건1
보육 정책과	계	1)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5	행정2, 사회복지3
가) 평생 나) 교육 다) 과	(1) 계	(가)	① 18	
	일반직	소계	18	
		(1)	5급	① 1 행정1
		(2)	6급	① 4 행정3, 행정·사서1
		(3)	7급	① 5 행정3, 행정·사서2
		(4)	8급	① 4 행정1, 사서3
건설과	계		32	
	일반직	소계	32	
		4급	1	지방기술서기관1
		5급	1	시설1
		6급	7	시설4, 사무운영1, 행정·시설1, 공업·시설1
		7급	12	행정1, 시설7, 운전1, 기계운영1, 행정·공업2
		8급	7	공업2, 시설4, 행정·공업1
		9급	4	행정1, 시설3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공 영 개발과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시설2, 행정·공업1, 시설·해양수산1
		7 급	3	행정·시설2, 시설·해양수산1
		8 급	2	행정1, 시설1
건축과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 급	1	시설1
		6 급	4	시설3, 행정·시설1
		7 급	5	행정1, 시설4
		8 급	4	시설3, 사무운영1
공 동 주택과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 급	1	행정·시설1
		6 급	3	시설1, 행정·시설1, 사회복지·시설1
		7 급	4	사회복지1, 시설3
		8 급	3	사회복지1, 시설2
도 시 관리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5	
		5 급	1	시설1
		6 급	6	시설4, 행정·시설2
		7 급	10	시설9, 행정·시설1
		8 급	6	행정2, 시설3, 사무운영1
도 시 경관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2, 행정·시설2
		7 급	6	행정4, 사무운영1, 행정·시설1
		8 급	4	행정3, 행정·시설1
	계		2	행정1, 시설1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공 원 녹지과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녹지1
		6 급	5	녹지2, 행정·녹지3
		7 급	8	녹지8
		8 급	5	녹지4, 행정·녹지1
교 통 행정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1, 행정·세무1, 행정·시설2
		7 급	9	행정4, 전산1, 시설3, 운전1
		8 급	5	행정4, 행정·시설1
자 동 차 관리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5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1, 사무운영1, 행정·세무2, 행정·공업1
		7 급	7	행정5, 세무1, 기계운영1
		8 급	9	행정8, 공업·시설1
	계		3	행정3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②	93	
보 건 행정과	계		28	
	일반직	소 계	28	
		4 급	1	지방기술서기관1
		5 급	2	의무1(개방형1), 행정·보건·간호1
		6 급	7	운전1, 행정·보건1, 보건·의료기술1, 보건·간호2, 의료기술·간호2
		7 급	14	보건·의료기술4, 보건·간호4, 의료기술·간호5, 간호조무1
		8 급	3	의료기술1, 운전1, 행정·보건·간호1
		9 급	1	보건1
	증진과	계	37	
건 강 증진과	일반직	소 계	37	
		5 급	3	의무2(개방형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6 급	8	보건·간호5, 의료기술·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2
		7 급	10	의료기술1, 간호4, 보건·간호5
		8 급	14	보건2, 간호10, 의료기술1, 보건·의료기술·간호1
		9 급	2	사회복지1, 보건1,
	식품 위생과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행정·보건1
		6 급	4	보건2, 행정·보건2
		7 급	6	보건6
		8 급	9	보건9
간석 건강 관리 센터	라) 계		(1) 8	
	일반직	소 계	8	
		5 급	1	보건·간호1
		6 급	2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 급	2	보건1, 보건·간호1
		8 급	3	의료기술1, 간호1, 보건·간호1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마) 합 계	(1)		316	
구월1동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9 급	1	행정1
구월2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5	행정1, 사회복지2,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9 급	1	행정1
구월3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9 급	2	행정·사회복지2
구월4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 급	7	행정4, 사회복지2, 사무운영1
		8 급	5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9 급	1	행정1

구 분	직 중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간석1동	계		15	
	일반직	소 계	15	
		①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4	행정2, 사회복지2
		8 급	5	행정1, 사회복지2, 운전1, 사무운영1
간석2동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 급	1	행정·보건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간석3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2, 사회복지3, 운전1
간석4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 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행정·사회복지1
만수1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 급	5	행정3, 사회복지2
만수2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8 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만수3동	계		14	
	일반직	소 계	14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사무운영1
만수4동	계		14	
	일반직	소 계	14	
		②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3	행정2, 사회복지1
		8 급	5	행정3, 사회복지2
만수5동	계		14	
	일반직	소 계	14	
		③ 5 급	1	행정 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4	행정2, 사회복지2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만수6동	계		15	
	일반직	소 계	15	
		④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구 분	직 중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만수2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8 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만수3동	계		14	
	일반직	소 계	14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사무운영1
만수4동	계		14	
	일반직	소 계	14	
		②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3	행정2, 사회복지1
		8 급	5	행정3, 사회복지2
만수5동	계		14	
	일반직	소 계	14	
		③ 5 급	1	행정 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4	행정2, 사회복지2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만수6동	계		15	
	일반직	소 계	15	
		④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구 분	직 중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장 수 서창동	계		14	
	일반직	소 계	14	
		⑤ 5 급	1	행정·복지1
		6 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서창2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⑥ 5 급	1	행정 1
		6 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4, 사회복지1
		8 급	6	행정4, 사회복지2
남촌 도림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논현1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⑦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8 급	5	행정3, 사회복지2
논현2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⑧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 급	5	행정3, 사회복지2
논현 고잔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공업·환경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 급	5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8 급	5	행정3, 사회복지2
	계		1	행정1
		소 계	1	
		5 급	1	행정·공업·환경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 급	5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8 급	5	행정3, 사회복지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2019년도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및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 후속 조치로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별표에 규정된 본청 및 직속기관, 각 동별 공무원의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별표 1] 구 본청 주요 조정 현황
 - 신규행정수요 정원 확보 및 인력보강 등 ⇒ 31명 증원
- [별표 3] 직속기관 주요 조정 현황
 - 치매안심센터 인력 보강 등 ⇒ 10명 증원
- [별표 5] 동 주요 조정 현황
 - 동 주민자치회 정원 확보 ⇒ 2명 증원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8월 2일

남동구 훈령 제3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지이유

- 남동구 인사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과 내용이 중복·유사한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 폐지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357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오피스텔의 거주자 및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 이용기피 및 고장 등 관리소홀로 구도심 주차난 유발
-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난립 제한을 위한 설치기준 강화
-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장의 일반 이용객 제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제한(안 제18조의2)
-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681, FAX 453-289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 별첨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오피스텔의 거주자 및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 이용기피 및 고장 등 관리소홀로 구도심 주차난 유발
-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난립 제한을 위한 설치기준 강화
-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장의 일반 이용객 제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제한(안 제18조의2)
-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19조의2)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제1항
-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오피스텔 중 하나의 용도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은 최소 2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20 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공시설 등의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운영 관리) ① 구청 및 소속 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으로써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 2 개정규정은 시행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등(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오피스텔 중 하나의 용도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은 최소 2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제19조의2(공공시설 등의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운영 관리) 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으로써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358호

기금 존속기한 정비(연장)를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등 조례의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자치단체 재량으로 설치한 기금은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되어 있는바, 존속기한 미설정기금 및 존속기한 만료예정(2019.12.31.)인 기금들에 대한 존속기한 조례정비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조례 4건
- 기금 존속기한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1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실
- 연 락 처 : 전화 453-2064 FAX 453-2059

마.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기금 존속기한 정비(연장)를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자치단체 재량으로 설치한 기금은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되어 있는바, 존속기한 미설정기금 및 존속기한 만료예정(2019.12.31.)인 기금들에 대한 존속기한 조례정비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조례 4건
 - 기금 존속기한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 존속기한 정비(연장)를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안)

제1조(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개정)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268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328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남동구 재정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신설>	제6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4년 12월 31일 -----.

□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조례 제1268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 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 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 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조례 제1268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4년 12월 31일</u> ----- ----- ----- -----.

□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조례 제1328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조례 제1328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조(유효기간) ----- <u>2024년 12월 31일</u>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361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업자(체)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참조
3. 법적근거
가. 위반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나. 처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4. 공고기간 : 2019.07.29.(월) ~ 2019.08.13.(화) (15일간)
5. 청문일 및 청문장소 : 2019.08.13.(화) 18:00까지 남동구청 6층 문화관광체육과
(※ 의견제출 기한 : 2019.08.13. 까지)
6. 위반내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 고 (예정처분)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018-45)	메이드 PC	한 ○ 현	인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49, 2층호 (구월동)	사행행위 (환전) (2018.11.28.11:00경~적발시)	등록취소

7. 등록취소 예정일 : 2019.08.14.(수)
8.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한 내 남동구청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2-453-213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정당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9.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전화번호 : (032)453-2143 / 팩스(032)453-2139

2019. 7.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등록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제활용품)]

공고

남동구청 2019-1373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07월 3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7.31. ~ 2019.08.14.
3. 공고대상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3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변 호	2019-0035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7.23. ○ 견인일 : 2019.08.07.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378-10 민물공원 식당 앞 반석교회쪽 주차선 내
	2019-0035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7.23. ○ 견인일 : 2019.08.07.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8-6 에스타워 주차장 입구 도로변
	2019-0037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7.29. ○ 견인일 : 2019.08.13.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44 한빛 주차장 내
			이하여백

- 223 -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도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19-0035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3동 1378-10 민물공원 식당 앞 반석교회쪽 주차선 내	2019.08.14. 이후	견인예정	
2	2019-0035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1동 318-6 에스타워 주차장 입구 도로변	2019.08.14. 이후	견인예정	
3	2019-0037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4동) 경인로599번길 44 한빛 주차장 내	2019.08.14. 이후	견인예정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374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9.07.31. ~ 2019.08.14.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9.08.14.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소유주 미상 이륜차 25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2822)

2019년 07월 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포 함	2019-0008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4.12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08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4.12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08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4.12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08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4.12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08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4.12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면 호	 2019-0011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5.16 ○ 보관장소 : ㈜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11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5.15 ○ 보관장소 : ㈜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13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4.26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15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5.15 ○ 보관장소 : ㈜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178(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5.08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면 호	 2019-00178(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5.08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18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5.16 ○ 보관장소 : ㈜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20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5.21 ○ 보관장소 : ㈜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21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6.10 ○ 보관장소 : ㈜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22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6.14 ○ 보관장소 : ㈜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편 면	2019-0024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6.20 ○ 보관장소 : ㈜서울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24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6.20 ○ 보관장소 : ㈜서울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246(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6.07 ○ 보관장소 : 기전산업㈜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246(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6.07 ○ 보관장소 : 기전산업㈜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24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6.10 ○ 보관장소 : 기전산업㈜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편 면	2019-0026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6.25 ○ 보관장소 : 기전산업㈜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27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7.11 ○ 보관장소 : (주)서울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27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7.02 ○ 보관장소 : 기전산업㈜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28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7.02 ○ 보관장소 : 기전산업㈜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030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7.17 ○ 보관장소 : 기전산업㈜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서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9-0008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구월로 192 구월힐스테이트앤티크캐슬골드아파트 1205동지하1층 3/4라인 기둥 가44 옆	2019.04.12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19-0008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구월로 192 구월힐스테이트앤티크캐슬골드아파트 1205동지하2층 3/4라인 현관 뒷편	2019.04.12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19-0008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구월로 192 구월힐스테이트앤티크캐슬골드아파트 1212동지하2층기동라15옆	2019.04.12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19-0008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구월로 192 구월힐스테이트앤티크캐슬골드아파트 1304동지하1층 3/4라인 입구 뒤	2019.04.12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5	2019-0008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구월로 192 구월힐스테이트앤티크캐슬골드아파트 1301동지하1층 1/2라인 기둥 가36 옆	2019.04.12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6	2019-0011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구월로 192 구월힐스테이트앤티크캐슬아파트 1102동 지하1층 1/2라인 기둥 나30 옆	2019.05.16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7	2019-0011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논현1동 549번지 논현한라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2019.05.15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8	2019-0013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논현1동 678-1) 소래역로28 조은프라자 앞	2019.04.26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4400

- 231 -

9	2019-0015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논현1동 111-144) 장도로 71 충청도회집 건너편 저전거 거치대	2019.05.15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10	2019-00178	번호판없음 (2대)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간석3동 80-1 간석여중 옆 골목 주차선 내	2019.05.08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4400
11	2019-0018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구월2동 24-1) 용전로 74 정각지구대	2019.05.16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12	2019-0020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논현2동 633-1) 논현로 105 논현휴먼시아 509동 주 현관 입구	2019.05.21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13	2019-0021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구월1동 1181-9) 남동대로702번길 14-1 종로인테리어 옆	2019.06.10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14	2019-0022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구월4동 349-535 모래마을3호 공영주차장 내	2019.06.14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15	2019-0024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논현1동 111-352) 장도로 86-20 바닷가소망횃집 앞	2019.06.20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16	2019-0024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논현2동 644-1)호구포로 203-31 나동하모니센터 자전거거치대	2019.06.20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17	2019-00246	번호판없음 (2대)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논현2동) 논곡로 52에서 공단방향으로 20미터 앞 인도 위	2019.06.07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4400
18	2019-0024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간석2동) 석촌로6번길 31 에이스식자재마트 뒤	2019.06.10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4400

- 232 -

19	2019-0026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구월1동 1208-21 영원룸 주차장 사유지	2019.06.25	기전산업(주)페차사업소	032-814-4400
20	2019-0027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간석동 456-10 사유지 내	2019.07.11	(주)서울페차사업소	032-442-6660
21	2019-0027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간석1동) 구월로64번길 28 개인주택 앞	2019.07.02	기전산업(주)페차사업소	032-814-4400
22	2019-0028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간석3동 83-16) 간석로 27 앞	2019.07.02	기전산업(주)페차사업소	032-814-4400
23	2019-0030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만수3동 842-22 화교어린이공원 앞	2019.07.17	기전산업(주)페차사업소	032-814-440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9-1377 호

공 시 송 달

성 명 유**자의 944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청
서 류 의 명 칭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반송함 장기방치”, “국외이주”, “직권말소” 및 “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 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19.07.31일을 2019.08.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오니 기한 내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 8.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 내역

연 번	납세번호	개인(법인)명	재산세액	공고사유	비 고
1	105301-2019-07-1-510-000404	유**자	109,730	수령인 없음	
2	105301-2019-07-1-510-000540	구**나	1,934,450	수령인 없음	
3	105301-2019-07-1-521-000828	정**연	850,300	기타	
4	105301-2019-07-1-521-000830	정**연	972,600	기타	
5	105301-2019-07-1-521-000878	이**식	384,200	수령인 없음	
6	105301-2019-07-1-521-000884	최**복	394,190	이사감	
7	105301-2019-07-1-521-000904	현**진	347,040	수령인 없음	
8	105301-2019-07-1-521-000910	L*T*N*X*	364,840	기타	
9	105301-2019-07-1-521-000914	J*N*A*G*A*G	364,840	수령인 없음	
10	105301-2019-07-1-510-001164	백**성	337,970	수령인 없음	
11	105301-2019-07-1-510-001169	정**환	330,860	기타	
12	105301-2019-07-1-510-001188	강**영	459,960	수령인 없음	
13	105301-2019-07-1-510-001477	주**회**그**개**	381,630	수령인 없음	
14	105301-2019-07-1-510-001484	주**회**그**개**	381,630	수령인 없음	
15	105301-2019-07-1-510-001937	최**욱	421,580	기타	
16	105301-2019-07-1-510-001944	정**남	421,580	수령인 없음	
17	105301-2019-07-1-510-001947	국**임	354,380	수령인 없음	
18	105301-2019-07-1-510-001948	김**권	354,380	이사감	
19	105301-2019-07-1-510-001951	이**노	425,060	기타	
20	105301-2019-07-1-510-001954	(주)이**엠**프**이	361,580	이사감	
21	105301-2019-07-1-510-001997	조**문	820,790	기타	
22	105301-2019-07-1-510-001998	조**문	661,910	기타	
23	105301-2019-07-1-510-002398	신**순	460,380	기타	
24	105301-2019-07-1-510-002552	박**현	359,130	수령인 없음	
25	105301-2019-07-1-510-002562	김**식	365,730	수령인 없음	
26	105301-2019-07-1-510-002565	이**순	360,270	수령인 없음	
27	105301-2019-07-1-510-002694	김**영	512,910	수령인 없음	
28	105301-2019-07-1-510-002929	이**중	177,300	수령인 없음	
29	105301-2019-07-1-510-002945	이**용	380,170	수령인 없음	
30	105301-2019-07-1-510-002950	(주)생**부**산**탁	420,890	수령인 없음	
31	105301-2019-07-1-510-002952	노**미	420,890	수령인 없음	
32	105301-2019-07-1-510-002968	강**인	405,550	수령인 없음	
33	105301-2019-07-1-510-003156	조**령	421,420	수령인 없음	
34	105301-2019-07-1-510-003157	조**령	346,970	수령인 없음	
35	105301-2019-07-1-510-003368	김**건	427,870	수령인 없음	
36	105301-2019-07-1-510-003470	박**희	143,740	수령거부	
37	105301-2019-07-1-510-003717	박**수	435,780	기타	
38	105301-2019-07-1-510-004065	(주)한**일**사	350,900	이사감	
39	105301-2019-07-1-510-004075	임**철	332,640	수령인 없음	
40	105301-2019-07-1-510-004240	박**현	416,850	수령인 없음	
41	105301-2019-07-1-510-004310	(주)새**산**개**	927,890	이사감	
42	105301-2019-07-1-510-004422	최**환	352,910	기타	
43	105301-2019-07-1-510-004425	강**필	365,130	기타	
44	105301-2019-07-1-510-004592	윤**화	413,650	수령인 없음	
45	105301-2019-07-1-510-004649	(주)엘**스**스**창**	171,380	수령인 없음	
46	105301-2019-07-1-510-004717	김**민	421,090	기타	
47	105301-2019-07-1-510-004804	이**경	720,020	수령인 없음	
48	105301-2019-07-1-510-004977	김**수	831,060	수령인 없음	
49	105301-2019-07-1-510-004981	이**일	310,450	수령인 없음	
50	105301-2019-07-1-510-004984	이**일	310,450	수령인 없음	
51	105301-2019-07-1-510-004985	이**일	926,490	수령인 없음	
52	105301-2019-07-1-510-005084	임**빈	344,380	수령인 없음	
53	105301-2019-07-1-522-005682	이**후	459,840	이사감	
54	105301-2019-07-1-522-005722	송**영	321,450	수령인 없음	
55	105301-2019-07-1-522-005885	윤**기	86,310	수령인 없음	
56	105301-2019-07-1-510-006662	뉴**인**합**설(주)	207,930	수령인 없음	
57	105301-2019-07-1-510-006663	뉴**인**합**설(주)	647,000	기타	
58	105301-2019-07-1-510-006664	뉴**인**합**설(주)	328,130	기타	

59	105301-2019-07-1-510-006665	뉴**인**합**설(주)	193,850	수령인 없음	
60	105301-2019-07-1-510-006666	뉴**인**합**설(주)	193,850	수령인 없음	
61	105301-2019-07-1-510-006667	뉴**인**합**설(주)	258,340	수령인 없음	
62	105301-2019-07-1-510-006668	뉴**인**합**설(주)	250,450	수령인 없음	
63	105301-2019-07-1-510-006924	김**주	215,630	수령거부	
64	105301-2019-07-1-510-007323	주**회**피**이**스**퍼**	1,260,080	수령인 없음	
65	105301-2019-07-1-510-007400	엄**숙	2,274,230	이사감	
66	105301-2019-07-1-510-008075	정**숙	509,040	기타	
67	105301-2019-07-1-510-008076	정**숙	509,040	기타	
68	105301-2019-07-1-510-008318	주**회**강**이**씨	1,000,820	이사감	
69	105301-2019-07-1-510-008333	주**회**강**이**씨	189,250	수령거부	
70	105301-2019-07-1-510-008334	주**회**강**이**씨	584,870	이사감	
71	105301-2019-07-1-510-008575	정**석	1,747,040	기타	
72	105301-2019-07-1-550-008635	이**규	3,190	수령거부	
73	105301-2019-07-1-550-008636	이**규	4,520	수령거부	
74	105301-2019-07-1-550-008660	최**정	600,930	수령인 없음	
75	105301-2019-07-1-550-008703	이**숙	363,100	수령인 없음	
76	105301-2019-07-1-550-008794	김**건	6,360	수령거부	
77	105301-2019-07-1-550-008801	임**욱	9,190	수령인 없음	
78	105301-2019-07-1-550-008845	김**자	7,790	수령인 없음	
79	105301-2019-07-1-550-008853	김**자	7,250	수령인 없음	
80	105301-2019-07-1-550-008932	주**숙	32,640	수령인 없음	
81	105301-2019-07-1-550-008970	(주)인**네**워**	2,710,440	기타	
82	105301-2019-07-1-550-009015	티**피**합**설(주)	522,560	수령인 없음	
83	105301-2019-07-1-550-009108	박**규	319,960	수령인 없음	
84	105301-2019-07-1-550-009193	(주)생**부**산**탁	406,600	기타	
85	105301-2019-07-1-550-009205	(주)생**부**산**탁	391,810	기타	
86	105301-2019-07-1-550-009227	박**영	330,730	기타	
87	105301-2019-07-1-550-009229	전**수	343,370	수령인 없음	
88	105301-2019-07-1-550-009230	박**진	330,730	기타	
89	105301-2019-07-1-550-009237	고**영	330,730	기타	
90	105301-2019-07-1-550-009271	송**석	346,470	수령인 없음	
91	105301-2019-07-1-550-009276	박**원	386,900	수령인 없음	
92	105301-2019-07-1-550-009280	추**국	386,900	수령인 없음	
93	105301-2019-07-1-550-009386	L*J*M*	331,580	기타	
94	105301-2019-07-1-550-009394	한**수	372,360	수령인 없음	
95	105301-2019-07-1-550-009397	김**식	380,680	수령인 없음	
96	105301-2019-07-1-550-009410	신**식	914,560	수령인 없음	
97	105301-2019-07-1-550-009415	이**기	423,550	수령인 없음	
98	105301-2019-07-1-550-009422	황**정	389,990	수령인 없음	
99	105301-2019-07-1-550-009427	(주)생**부**산**탁	383,340	수령인 없음	
100	105301-2019-07-1-550-009476	P*N*X*J*A*	523,400	수령인 없음	
101	105301-2019-07-1-550-009492	홍**영	482,630	수령인 없음	
102	105301-2019-07-1-550-009537	김**관	339,160	수령인 없음	
103	105301-2019-07-1-550-009555	박**숙	313,930	수령인 없음	
104	105301-2019-07-1-550-009578	변**연	378,730	수령인 없음	
105	105301-2019-07-1-550-009582	현**영	388,010	수령인 없음	
106	105301-2019-07-1-550-009586	김**채	388,010	수령인 없음	
107	105301-2019-07-1-550-009827	김**훈	324,470	이사감	
108	105301-2019-07-1-550-009828	김**훈	322,560	이사감	
109	105301-2019-07-1-550-010044	한**석	370,700	수령인 없음	
110	105301-2019-07-1-550-010088	(주)생**부**산**탁	354,660	기타	
111	105301-2019-07-1-550-010094	(주)생**부**산**탁	339,110	기타	
112	105301-2019-07-1-550-010095	(주)생**부**산**탁	354,660	이사감	
113	105301-2019-07-1-540-010339	김**정	67,100	수령거부	
114	105301-2019-07-1-540-010341	김**정	90,450	수령거부	
115	105301-2019-07-1-540-010414	한**심	12,220	수령인 없음	
116	105301-2019-07-1-540-010496	문**태	429,870	수령인 없음	
117	105301-2019-07-1-540-010502	정**호	350,670	기타	
118	105301-2019-07-1-540-010503	정**호	201,930	수령거부	
119	105301-2019-07-1-540-010504	문**태	954,540	수령인 없음	

120	105301-2019-07-1-551-011173	엄**호	147,930	수령인 없음	
121	105301-2019-07-1-551-011501	변**녀	311,840	이사감	
122	105301-2019-07-1-550-011507	수**업**동**함**양**	321,560	수령인 없음	
123	105301-2019-07-1-551-011538	장**조	28,840	수령인 없음	
124	105301-2019-07-1-551-011563	조**구	27,560	수령인 없음	
125	105301-2019-07-1-551-011577	최**철	27,250	수령인 없음	
126	105301-2019-07-1-551-011586	김**숙	22,090	수령인 없음	
127	105301-2019-07-1-551-011597	김**희	24,670	수령인 없음	
128	105301-2019-07-1-551-011754	윤**애	23,070	수령거부	
129	105301-2019-07-1-551-011931	허**돌	1,090,260	수령인 없음	
130	105301-2019-07-1-551-011934	허**돌	909,190	수령인 없음	
131	105301-2019-07-1-551-011943	조**혁	564,620	수령인 없음	
132	105301-2019-07-1-551-011956	송**나	506,850	수령인 없음	
133	105301-2019-07-1-551-011985	정**영	585,520	수령인 없음	
134	105301-2019-07-1-551-011988	김**학	506,850	수령인 없음	
135	105301-2019-07-1-551-012080	(주)생**부**산**탁	433,020	기타	
136	105301-2019-07-1-551-012118	김**한	318,630	수령인 없음	
137	105301-2019-07-1-551-012242	박**명	310,530	수령인 없음	
138	105301-2019-07-1-551-012255	김**숙	638,610	수령인 없음	
139	105301-2019-07-1-551-012260	백**선	638,610	수령인 없음	
140	105301-2019-07-1-551-012331	박**덕	640,380	수령인 없음	
141	105301-2019-07-1-530-012513	김**욱	582,690	기타	
142	105301-2019-07-1-530-012640	김**윤	405,590	수령인 없음	
143	105301-2019-07-1-530-012759	강**일	413,430	수령인 없음	
144	105301-2019-07-1-530-012844	주**경	769,700	기타	
145	105301-2019-07-1-530-013086	박**영	327,820	기타	
146	105301-2019-07-1-530-013095	김**완	327,820	수령인 없음	
147	105301-2019-07-1-551-013226	한**열**리**공**회**천**역**회	208,700	수령인 없음	
148	105301-2019-07-1-530-013296	주**희** **이**제**통**	579,370	기타	
149	105301-2019-07-1-530-013445	박**욱	348,690	수령인 없음	
150	105301-2019-07-1-530-013458	(주)생**부**산**탁	474,620	수령인 없음	
151	105301-2019-07-1-530-013501	성**건**(주)	19,420	수령거부	
152	105301-2019-07-1-530-013502	(주)생**부**산**탁	353,190	기타	
153	105301-2019-07-1-530-013631	한**섭	2,467,780	수령인 없음	
154	105301-2019-07-1-530-013635	한**섭	2,467,780	수령인 없음	
155	105301-2019-07-1-530-013639	한**섭	2,467,780	수령인 없음	
156	105301-2019-07-1-530-013711	이**욱	126,720	수령인 없음	
157	105301-2019-07-1-551-014032	에**지**건**(주)	513,530	기타	
158	105301-2019-07-1-551-014145	구**숙	423,320	수령인 없음	
159	105301-2019-07-1-551-014146	구**숙	331,000	수령인 없음	
160	105301-2019-07-1-551-014250	박**수	583,720	수령인 없음	
161	105301-2019-07-1-551-014317	정**연	76,890	수령인 없음	
162	105301-2019-07-1-551-014426	남**희	623,950	기타	
163	105301-2019-07-1-550-014603	황**자	1,554,550	수령인 없음	
164	105301-2019-07-1-570-014831	강**웅	433,490	수령인 없음	
165	105301-2019-07-1-570-014836	김**호	432,790	수령인 없음	
166	105301-2019-07-1-570-015014	조**정	345,200	수령인 없음	
167	105301-2019-07-1-570-015069	유**오	30,090	수령인 없음	
168	105301-2019-07-1-570-015173	윤**자	22,650	수령인 없음	
169	105301-2019-07-1-570-015176	김**성	20,820	수령인 없음	
170	105301-2019-07-1-570-015519	유**회**정**부**산**설**투**자**	39,590	수령거부	
171	105301-2019-07-1-570-015543	유**회**정**부**산**설**투**자**	45,270	수령인 없음	
172	105301-2019-07-1-570-015637	유**회**정**부**산**설**투**자**	31,730	수령인 없음	
173	105301-2019-07-1-570-015673	미**와**시(주)	30,820	수령인 없음	
174	105301-2019-07-1-570-015674	미**와**시(주)	35,780	수령인 없음	
175	105301-2019-07-1-570-015675	미**와**시(주)	39,930	수령인 없음	
176	105301-2019-07-1-570-015676	미**와**시(주)	36,180	수령인 없음	
177	105301-2019-07-1-570-015683	미**와**시(주)	25,330	수령인 없음	
178	105301-2019-07-1-570-015706	미**와**시(주)	33,110	수령인 없음	

179	105301-2019-07-1-570-015713	미**와**시(주)	20,500	수령인 없음	
180	105301-2019-07-1-570-015719	미**와**시(주)	22,930	수령인 없음	
181	105301-2019-07-1-570-015723	미**와**시(주)	22,000	수령인 없음	
182	105301-2019-07-1-570-015724	미**와**시(주)	22,000	수령인 없음	
183	105301-2019-07-1-570-015725	미**와**시(주)	22,000	수령인 없음	
184	105301-2019-07-1-570-015727	미**와**시(주)	22,000	수령인 없음	
185	105301-2019-07-1-570-015934	서**택	656,440	수령인 없음	
186	105301-2019-07-1-580-016144	최**식	404,540	수령인 없음	
187	105301-2019-07-1-580-016145	김**진	413,550	수령인 없음	
188	105301-2019-07-1-580-016161	김**욱	309,780	기타	
189	105301-2019-07-1-580-016173	(주)생**부**산**탁	334,050	수령인 없음	
190	105301-2019-07-1-580-016196	이**호	331,660	수령인 없음	
191	105301-2019-07-1-580-016227	이**미	983,290	기타	
192	105301-2019-07-1-580-016278	이**근	384,970	기타	
193	105301-2019-07-1-580-016280	(주)생**부**산**탁	384,970	기타	
194	105301-2019-07-1-580-016283	강**학	384,970	기타	
195	105301-2019-07-1-570-016306	장**석	340,700	수령인 없음	
196	105301-2019-07-1-570-016307	김**희	340,700	수령인 없음	
197	105301-2019-07-1-570-016321	(주)생**부**산**탁	326,210	수령인 없음	
198	105301-2019-07-1-582-016659	황**필	386,260	이사감	
199	105301-2019-07-1-560-016805	(주)생**부**산**탁	310,370	기타	
200	105301-2019-07-1-583-017571	신**종**건**(주)	19,780	수령인 없음	
201	105301-2019-07-1-583-017572	신**종**건**(주)	19,780	수령인 없음	
202	105301-2019-07-1-583-017616	정**한	1,046,860	기타	
203	105301-2019-07-1-583-017970	장**채	12,280	수령거부	
204	105301-2019-07-1-583-018152	오**석	118,920	수령거부	
205	105301-2019-07-1-583-018593	김**순	461,540	수령인 없음	
206	105301-2019-07-1-583-018643	(주)만**미**농**회**법**	1,562,820	기타	
207	105301-2019-07-1-580-018893	김**현	640,190	수령인 없음	
208	105301-2019-07-1-580-018910	김**애	202,760	수령인 없음	
209	105301-2019-07-1-580-018920	강**숙	1,117,070	수령인 없음	
210	105301-2019-07-1-580-018942	조**준	627,070	수령인 없음	
211	105301-2019-07-1-650-019184	주**회** **진**이**패**	5,458,740	기타	
212	105301-2019-07-1-800-019778	주**회**파**	14,413,740	기타	
213	105301-2019-07-1-800-019785	임**석	4,521,150	기타	
214	105301-2019-07-1-660-019852	정**중	613,110	수령인 없음	
215	105301-2019-07-1-690-020075	곽**섭	337,140	기타	
216	105301-2019-07-1-690-020121	김**태	318,890	수령인 없음	
217	105301-2019-07-1-690-020129	곽**섭	318,890	수령인 없음	
218	105301-2019-07-1-690-020133	이**하	318,890	이사감	
219	105301-2019-07-1-690-020142	최**호	318,890	수령인 없음	
220	105301-2019-07-1-690-020148	윤**철	318,890	기타	
221	105301-2019-07-1-690-020153	이**식	318,890	기타	
222	105301-2019-07-1-690-020159	김**선	318,890	수령인 없음	
223	105301-2019-07-1-690-020201	김**복	372,000	수령인 없음	
224	105301-2019-07-1-690-020204	이**식	301,360	수령거부	
225	105301-2019-07-1-800-020386	주**회** **스**스**	6,663,900	수령인 없음	
226	105301-2019-07-1-800-020391	아**씨**전**	193,810	수령인 없음	
227	105301-2019-07-1-800-020392	아**씨**전**	235,130	수령인 없음	
228	105301-2019-07-1-800-020394	아**씨**전**	317,880	기타	
229	105301-2019-07-1-800-020420	(주)토**스	593,380	기타	
230	105301-2019-07-1-800-020422	(주)토**스	45,840	수령인 없음	
231	105301-2019-07-1-800-020464	유**성	520,070	기타	
232	105301-2019-07-1-800-020492	(주)에**케**티**지**어**	78,130	수령거부	
233	105301-2019-07-1-800-020587	차**수	89,510	수령인 없음	
234	105301-2019-07-1-800-020612	주**회**신**엠**	5,920,440	기타	
235	105301-2019-07-1-800-020735	최**선	314,200	수령인 없음	
236	105301-2019-07-1-800-020957	김**민	478,950	수령인 없음	
237	105301-2019-07-1-800-020992	주**회**말**스	478,950	이사감	
238	105301-2019-07-1-800-021022	수**업**동**함**양**	478,950	수령인 없음	
239	105301-2019-07-1-800-021023	주**회**말**스	478,950	이사감	

240	105301-2019-07-1-800-021025	수**업**동**합**왕**	478,950	기타	
241	105301-2019-07-1-800-021053	김**현	478,950	기타	
242	105301-2019-07-1-800-021118	주**회**말**스	478,950	이사감	
243	105301-2019-07-1-800-021179	수**업**동**합**왕**	395,790	수령인 없음	
244	105301-2019-07-1-800-021209	(주)생**부**산**탁	478,950	기타	
245	105301-2019-07-1-800-021278	(주)생**부**산**탁	478,950	수령인 없음	
246	105301-2019-07-1-800-021295	박**준	478,950	기타	
247	105301-2019-07-1-800-021355	최**희	108,270	수령거부	
248	105301-2019-07-1-800-021376	패**렌**	108,270	수령인 없음	
249	105301-2019-07-1-700-021596	이**엽	1,601,060	수령인 없음	
250	105301-2019-07-1-700-021597	이**엽	1,590,010	수령인 없음	
251	105301-2019-07-1-700-021637	차**원	120,040	수령인 없음	
252	105301-2019-07-1-690-021796	이**	90,920	수령인 없음	
253	105301-2019-07-1-690-022072	나**철	1,184,760	수령인 없음	
254	105301-2019-07-1-700-022219	김**희	979,420	수령인 없음	
255	105301-2019-07-1-700-022320	이**성	449,650	수령인 없음	
256	105301-2019-07-1-700-022363	서**경	325,120	수령인 없음	
257	105301-2019-07-1-700-022398	이**우	382,150	수령인 없음	
258	105301-2019-07-1-700-022399	이**우	393,530	수령인 없음	
259	105301-2019-07-1-700-022400	이**우	383,760	수령인 없음	
260	105301-2019-07-1-700-022465	홍**술	1,063,170	기타	
261	105301-2019-07-1-700-022544	표**철	1,393,950	수령인 없음	
262	105301-2019-07-1-700-022545	표**철	1,169,140	수령인 없음	
263	105301-2019-07-1-700-022813	송**주	348,680	수령인 없음	
264	105301-2019-07-1-700-022991	이**영	1,649,920	기타	
265	105301-2019-07-1-700-023012	소**남	1,256,940	수령인 없음	
266	105301-2019-07-1-700-023101	성**정	1,216,670	수령인 없음	
267	105301-2019-07-1-700-023272	정**숙	836,040	수령인 없음	
268	105301-2019-07-1-700-023486	문**진	338,560	수령인 없음	
269	105301-2019-07-1-700-023529	이**택	338,560	기타	
270	105301-2019-07-1-700-023535	양**주	338,560	수령인 없음	
271	105301-2019-07-1-700-023561	박**환	338,560	수령인 없음	
272	105301-2019-07-1-700-023633	서**나	347,810	수령인 없음	
273	105301-2019-07-1-700-023645	임**욱	338,560	수령인 없음	
274	105301-2019-07-1-700-023683	이**만	338,560	수령인 없음	
275	105301-2019-07-1-700-024228	(주)명**씨**스	529,240	수령인 없음	
276	105301-2019-07-1-700-024269	이**민	529,240	수령인 없음	
277	105301-2019-07-1-700-024303	문**일	529,240	수령인 없음	
278	105301-2019-07-1-700-024362	박**호	504,540	기타	
279	105301-2019-07-1-700-024400	김**서	504,540	수령인 없음	
280	105301-2019-07-1-700-024449	윤**섭	438,910	기타	
281	105301-2019-07-1-700-024450	김**진	438,910	기타	
282	105301-2019-07-1-700-024486	김**홍	309,390	수령인 없음	
283	105301-2019-07-1-700-024487	김**홍	381,200	수령인 없음	
284	105301-2019-07-1-700-024607	윤**승	310,810	수령인 없음	
285	105301-2019-07-1-700-025348	이**진	323,280	수령인 없음	
286	105301-2019-07-1-700-025349	이**진	323,280	수령인 없음	
287	105301-2019-07-1-700-025359	윤**호	360,960	수령인 없음	
288	105301-2019-07-1-700-025362	주**회**에**에**게**	395,270	수령인 없음	
289	105301-2019-07-1-700-025488	정**호	73,300	수령인 없음	
290	105301-2019-07-1-710-026365	강**철	443,740	수령인 없음	
291	105301-2019-07-1-710-026382	김**섭	443,740	수령인 없음	
292	105301-2019-07-1-710-026387	송**우	436,080	수령인 없음	
293	105301-2019-07-1-710-026495	윤**영	442,830	수령인 없음	
294	105301-2019-07-1-710-026532	이**현	443,740	수령인 없음	
295	105301-2019-07-1-710-026541	강**철	443,740	수령인 없음	
296	105301-2019-07-1-710-026564	정**우	445,000	기타	
297	105301-2019-07-1-710-026595	정**희	443,740	수령인 없음	
298	105301-2019-07-1-710-026597	위**량	436,080	기타	
299	105301-2019-07-1-690-026826	알**딘**통**식**사	78,800	수령인 없음	
300	105301-2019-07-1-690-026846	이**빈	565,260	기타	
301	105301-2019-07-1-690-027001	이**진	937,210	수령인 없음	

302	105301-2019-07-1-690-027032	광**해**주**회**	679,270	기타	
303	105301-2019-07-1-690-027033	광**해**주**회**	1,137,450	기타	
304	105301-2019-07-1-690-027034	광**해**주**회**	155,210	수령인 없음	
305	105301-2019-07-1-690-027064	노**범	403,020	기타	
306	105301-2019-07-1-690-027083	시**월**지**지**주**조**	4,971,280	수령인 없음	
307	105301-2019-07-1-690-027527	강**권	434,950	수령인 없음	
308	105301-2019-07-1-690-027791	황**임	65,670	수령거부	
309	105301-2019-07-1-690-028121	임**섭	445,410	수령인 없음	
310	105301-2019-07-1-690-028124	임**섭	435,490	수령인 없음	
311	105301-2019-07-1-690-028127	임**섭	376,710	수령인 없음	
312	105301-2019-07-1-710-028443	박**수	791,590	기타	
313	105301-2019-07-1-710-028984	정**경	540,000	수령인 없음	
314	105301-2019-07-1-710-028985	정**경	433,220	수령인 없음	
315	105301-2019-07-1-710-029564	(주)티**티	680,400	기타	
316	105301-2019-07-1-710-029624	김**중	711,380	수령인 없음	
317	105301-2019-07-1-800-030396	김**기	398,940	수령인 없음	
318	105301-2019-07-1-800-030668	세**녕**(주)	2,141,300	기타	
319	105301-2019-07-1-800-030686	김**재	847,570	수령인 없음	
320	105301-2019-07-1-800-030709	주**회**영**이**	9,120	수령인 없음	
321	105301-2019-07-1-800-030771	탐**이**태**(주)	644,970	기타	
322	105301-2019-07-1-800-030797	(주)아**태**	551,170	기타	
323	105301-2019-07-1-800-030814	(주)한**제**안**	632,130	이사감	
324	105301-2019-07-1-800-030818	(주)한**제**안**	551,170	기타	
325	105301-2019-07-1-800-030868	김**환	522,860	기타	
326	105301-2019-07-1-800-031021	주**회**아**아**앤**	426,980	수령인 없음	
327	105301-2019-07-1-800-031082	박**선	329,150	수령인 없음	
328	105301-2019-07-1-800-031083	주**회** **천**크	703,700	이사감	
329	105301-2019-07-1-800-031087	탁**래	703,700	수령인 없음	
330	105301-2019-07-1-800-031094	영**이**지(주)	703,700	이사감	
331	105301-2019-07-1-800-031134	홍**순	336,500	수령인 없음	
332	105301-2019-07-1-800-031138	이**기	329,150	기타	
333	105301-2019-07-1-800-031140	주**회**다**푸**	685,220	기타	
334	105301-2019-07-1-800-031141	주**회**다**푸**	651,080	기타	
335	105301-2019-07-1-800-031142	주**회**다**푸**	657,590	기타	
336	105301-2019-07-1-800-031166	변**수	329,150	기타	
337	105301-2019-07-1-800-031168	김**욱	329,150	기타	
338	105301-2019-07-1-800-031180	(주)디**텍	632,670	기타	
339	105301-2019-07-1-800-031186	아**네**	703,700	이사감	
340	105301-2019-07-1-800-031211	제**게**(주)	657,490	수령인 없음	
341	105301-2019-07-1-800-031216	주**회**영**앤**니**링	329,150	수령인 없음	
342	105301-2019-07-1-800-031284	주**회**거**기**	435,690	수령인 없음	
343	105301-2019-07-1-650-032213	강**희	622,260	수령인 없음	
344	105301-2019-07-1-655-032257	리**에**주**회**	304,240	수령거부	
345	105301-2019-07-1-655-032259	(주)생**부**산**탁	551,040	수령인 없음	
346	105301-2019-07-1-655-032260	(주)생**부**산**탁	483,560	수령인 없음	
347	105301-2019-07-1-655-032267	(주)생**부**산**탁	2,420,680	수령인 없음	
348	105301-2019-07-1-655-032269	(주)생**부**산**탁	476,530	수령인 없음	
349	105301-2019-07-1-655-032270	(주)생**부**산**탁	538,380	수령인 없음	
350	105301-2019-07-1-655-032271	(주)생**부**산**탁	577,690	수령인 없음	
351	105301-2019-07-1-655-032272	(주)생**부**산**탁	504,000	수령인 없음	
352	105301-2019-07-1-655-032273	(주)생**부**산**탁	775,180	수령인 없음	
353	105301-2019-07-1-655-032274	(주)생**부**산**탁	529,920	수령인 없음	
354	105301-2019-07-1-655-032275	(주)생**부**산**탁	618,520	수령인 없음	
355	105301-2019-07-1-655-032278	(주)생**부**산**탁	538,380	수령인 없음	
356	105301-2019-07-1-655-032279	(주)생**부**산**탁	577,690	수령인 없음	
357	105301-2019-07-1-650-032336	(주)정**	708,960	수령인 없음	
358	105301-2019-07-1-650-032512	서**준	667,300	수령인 없음	
359	105301-2019-07-1-650-032513	서**준	1,205,770	수령인 없음	
360	105301-2019-07-1-650-032514	허**숙	604,900	이사감	
361	105301-2019-07-1-650-032515	허**숙	618,720	이사감	
362	105301-2019-07-1-650-032516	허**숙	903,350	이사감	

363	105301-2019-07-1-650-032888	(주)생**부**산**탁	636,400	수령인 없음	
364	105301-2019-07-1-650-032889	(주)생**부**산**탁	472,350	수령인 없음	
365	105301-2019-07-1-650-032890	(주)생**부**산**탁	433,500	수령인 없음	
366	105301-2019-07-1-650-032891	(주)생**부**산**탁	278,630	수령인 없음	
367	105301-2019-07-1-650-032903	(주)생**부**산**탁	833,180	수령인 없음	
368	105301-2019-07-1-650-032914	양**환	532,210	수령인 없음	
369	105301-2019-07-1-650-032947	김**홍	1,028,160	수령인 없음	
370	105301-2019-07-1-650-032948	김**홍	519,220	수령인 없음	
371	105301-2019-07-1-650-032949	최**태	745,790	기타	
372	105301-2019-07-1-655-032979	최**석	349,320	수령인 없음	
373	105301-2019-07-1-650-033261	성**경	392,290	기타	
374	105301-2019-07-1-655-033499	이**철	318,370	수령인 없음	
375	105301-2019-07-1-710-033581	장**우	564,370	기타	
376	105301-2019-07-1-710-033696	강**용	875,870	기타	
377	105301-2019-07-1-710-033716	이**준	875,870	기타	
378	105301-2019-07-1-650-034262	최**석	1,159,570	수령인 없음	
379	105301-2019-07-1-710-034264	김**진	310,660	수령인 없음	
380	105301-2019-07-1-710-034436	이**숙	432,210	이사감	
381	105301-2019-07-1-800-034529	김**태	952,560	이사감	
382	105301-2019-07-1-800-034816	(주)에**케**티**지**어**	178,140	수령거부	
383	105301-2019-07-1-800-034817	(주)에**케**티**지**어**	197,950	수령거부	
384	105301-2019-07-1-800-034818	(주)에**케**티**지**어**	197,950	수령거부	
385	105301-2019-07-1-800-034819	(주)에**케**티**지**어**	197,950	수령거부	
386	105301-2019-07-1-800-034820	(주)에**케**티**지**어**	197,950	수령거부	
387	105301-2019-07-1-800-034821	(주)에**케**티**지**어**	197,950	수령거부	
388	105301-2019-07-1-800-034822	(주)에**케**티**지**어**	197,950	수령거부	
389	105301-2019-07-1-800-034823	(주)에**케**티**지**어**	216,820	수령거부	
390	105301-2019-07-1-800-034824	(주)에**케**티**지**어**	229,970	수령거부	
391	105301-2019-07-1-800-034825	(주)에**케**티**지**어**	249,670	수령거부	
392	105301-2019-07-1-510-034969	노**녀	477,770	수령인 없음	
393	105301-2019-07-1-510-034970	노**녀	477,770	수령인 없음	
394	105301-2019-07-1-510-035033	주**회**새**디**씨	361,490	기타	
395	105301-2019-07-1-510-035090	최**강	407,610	수령인 없음	
396	105301-2019-07-1-510-035131	주**혜	514,610	수령인 없음	
397	105301-2019-07-1-510-035132	주**혜	411,640	수령인 없음	
398	105301-2019-07-1-510-035138	오**아**주**회**	410,450	이사감	
399	105301-2019-07-1-510-035140	(주)생**부**산**탁	403,960	수령인 없음	
400	105301-2019-07-1-510-035141	(주)생**부**산**탁	403,960	수령인 없음	
401	105301-2019-07-1-510-035144	(주)생**부**산**탁	392,410	수령인 없음	
402	105301-2019-07-1-510-035153	(주)생**부**산**탁	411,640	수령인 없음	
403	105301-2019-07-1-510-035157	(주)생**부**산**탁	351,930	수령인 없음	
404	105301-2019-07-1-510-035158	(주)생**부**산**탁	351,930	수령인 없음	
405	105301-2019-07-1-510-035238	이**형	395,490	수령인 없음	
406	105301-2019-07-1-510-035240	이**형	314,130	수령인 없음	
407	105301-2019-07-1-510-035402	이**형	467,860	수령인 없음	
408	105301-2019-07-1-510-035404	이**형	559,600	수령인 없음	
409	105301-2019-07-1-510-035408	성**경	496,690	수령인 없음	
410	105301-2019-07-1-510-035411	최**순	908,540	수령인 없음	
411	105301-2019-07-1-510-035487	김**인	607,820	수령인 없음	
412	105301-2019-07-1-510-035493	미**앳**중**건***(주)	548,660	기타	
413	105301-2019-07-1-510-035496	주**회**주**씨**	497,660	수령인 없음	
414	105301-2019-07-1-510-035503	김**환	327,750	수령인 없음	
415	105301-2019-07-1-510-035514	주**회**유**퍼**	332,620	이사감	
416	105301-2019-07-1-510-035830	우**순	310,530	수령인 없음	
417	105301-2019-07-1-660-036031	윤**철	338,800	수령인 없음	
418	105301-2019-07-1-710-036045	이**락	797,920	수령인 없음	
419	105301-2019-07-1-510-036404	주**회**오**오**리**	201,570	수령인 없음	
420	105301-2019-07-1-510-036405	주**회**오**오**리**	282,590	수령인 없음	

421	105301-2019-07-1-510-036420	문**욱	356,450	수령인 없음	
422	105301-2019-07-1-510-036428	주**회**컴**라**프	503,790	기타	
423	105301-2019-07-1-510-036429	주**회**컴**라**프	256,110	수령인 없음	
424	105301-2019-07-1-510-036430	주**회**컴**라**프	249,590	수령인 없음	
425	105301-2019-07-1-510-036439	김**철	333,060	기타	
426	105301-2019-07-1-510-036440	김**철	432,070	기타	
427	105301-2019-07-1-510-036551	이**준	1,333,270	수령인 없음	
428	105301-2019-07-1-550-036790	(주)생**부**산**탁	435,580	수령인 없음	
429	105301-2019-07-1-551-036830	소**숙	836,220	수령인 없음	
430	105301-2019-07-1-580-036880	최**형	340,750	수령인 없음	
431	105301-2019-07-1-580-036891	(주)생**부**산**탁	340,750	수령인 없음	
432	105301-2019-07-1-800-036913	(주)재**하**택	6,078,960	이사감	
433	105301-2019-07-1-510-037463	케**브**엠(주)	38,026,980	기타	
434	105301-2019-07-1-510-037931	양**중	326,630	수령인 없음	
435	105301-2019-07-1-510-037963	정**석	330,820	수령인 없음	
436	105301-2019-07-1-510-037988	유**순	468,820	수령인 없음	
437	105301-2019-07-1-520-038198	강**용	357,7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438	105301-2019-07-1-522-038336	홍**숙	364,450	수령인 없음	
439	105301-2019-07-1-522-038379	유**숙	414,700	수령인 없음	
440	105301-2019-07-1-522-038699	정**자	462,070	수령인 없음	
441	105301-2019-07-1-522-038732	유**화	597,490	수령인 없음	
442	105301-2019-07-1-521-038828	조**자	790,720	수령인 없음	
443	105301-2019-07-1-521-038875	김**홍	433,040	수령인 없음	
444	105301-2019-07-1-550-039479	노**수	516,010	수령인 없음	
445	105301-2019-07-1-550-039865	김**섭	6,720	수령인 없음	
446	105301-2019-07-1-551-040392	유**석	934,000	기타	
447	105301-2019-07-1-551-040442	안**자	454,160	기타	
448	105301-2019-07-1-551-040449	류**영	506,850	수령인 없음	
449	105301-2019-07-1-551-040469	홍**갑	682,110	수령인 없음	
450	105301-2019-07-1-551-040479	공**타	581,630	수령인 없음	
451	105301-2019-07-1-530-040568	강**수	813,670	기타	
452	105301-2019-07-1-530-040569	김**자	349,570	수령인 없음	
453	105301-2019-07-1-530-040682	김**부	689,320	수령인 없음	
454	105301-2019-07-1-530-040685	김**순	323,240	수령인 없음	
455	105301-2019-07-1-551-040807	이**덕	1,484,670	수령인 없음	
456	105301-2019-07-1-530-040888	아**이**중**	312,420	기타	
457	105301-2019-07-1-530-040915	정**주	938,740	수령인 없음	
458	105301-2019-07-1-530-040934	김**정	333,190	수령인 없음	
459	105301-2019-07-1-551-041126	장**기	579,560	이사감	
460	105301-2019-07-1-551-041207	(주)팔**	17,599,080	기타	
461	105301-2019-07-1-551-041257	채**영	498,520	수령인 없음	
462	105301-2019-07-1-550-041308	이**욱	334,440	수령인 없음	
463	105301-2019-07-1-530-041388	(주)성**교**레**션	98,030	수령인 없음	
464	105301-2019-07-1-550-041462	김**식	205,130	수령거부	
465	105301-2019-07-1-570-041694	김**수	559,040	수령인 없음	
466	105301-2019-07-1-570-041717	오**레	510,3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467	105301-2019-07-1-581-041755	박**순	389,970	수령인 없음	
468	105301-2019-07-1-580-041825	주**회	537,070	수령인 없음	
469	105301-2019-07-1-560-041842	최**희	531,820	수령인 없음	
470	105301-2019-07-1-582-042458	최**희	317,640	기타	
471	105301-2019-07-1-582-042459	문**영	317,640	수령인 없음	
472	105301-2019-07-1-582-042460	문**경	317,640	기타	
473	105301-2019-07-1-582-042642	장**례	672,180	수령인 없음	
474	105301-2019-07-1-560-042787	박**희	583,480	수령인 없음	
475	105301-2019-07-1-560-042820	(주)성**	2,825,200	수령인 없음	
476	105301-2019-07-1-650-043433	장**정	6,370	수령인 없음	
477	105301-2019-07-1-650-043557	이**섭	12,160	수령인 없음	
478	105301-2019-07-1-650-043621	월**박**주**공**인**중**	3,367,610	수령인 없음	
479	105301-2019-07-1-650-043724	김**환	454,860	수령인 없음	
480	105301-2019-07-1-650-043748	성**운***(주)	25,860	수령인 없음	

481	105301-2019-07-1-800-044220	(주)이**엠	3,726,290	기타	
482	105301-2019-07-1-800-044253	(주)두**이**앤	619,570	수령인 없음	
483	105301-2019-07-1-800-044254	김**구	3,070	수령인 없음	
484	105301-2019-07-1-800-044348	(주)유**상**	1,966,030	수령인 없음	
485	105301-2019-07-1-660-044537	(주)성**	520,100	수령인 없음	
486	105301-2019-07-1-660-044540	(주)성**	409,090	수령인 없음	
487	105301-2019-07-1-660-044546	김**호	403,720	수령인 없음	
488	105301-2019-07-1-660-044647	김**연	439,680	수령인 없음	
489	105301-2019-07-1-660-044700	오**환	326,490	수령인 없음	
490	105301-2019-07-1-690-044889	이**두	5,300	수령인 없음	
491	105301-2019-07-1-800-045057	(주)남**피**비	3,083,250	기타	
492	105301-2019-07-1-800-045209	서**아	2,208,820	수령인 없음	
493	105301-2019-07-1-690-045393	김**수	418,990	수령인 없음	
494	105301-2019-07-1-690-045418	함**옥	430,600	수령인 없음	
495	105301-2019-07-1-690-045608	권**자	420,330	기타	
496	105301-2019-07-1-690-045630	장**경	565,330	수령인 없음	
497	105301-2019-07-1-690-045656	김**하	442,850	수령인 없음	
498	105301-2019-07-1-710-045775	(주)성**알**	38,040	수령인 없음	
499	105301-2019-07-1-710-045784	허**연	424,500	수령인 없음	
500	105301-2019-07-1-710-046027	백**기	109,920	수령인 없음	
501	105301-2019-07-1-710-046028	백**기	2,278,920	기타	
502	105301-2019-07-1-710-046179	(주)위**이**	5,460	수령인 없음	
503	105301-2019-07-1-710-046201	(주)금**	2,830	수령인 없음	
504	105301-2019-07-1-710-046205	양**국	41,820	수령인 없음	
505	105301-2019-07-1-800-046543	백**옥	1,755,790	수령인 없음	
506	105301-2019-07-1-800-046686	방**철	6,011,400	수령인 없음	
507	105301-2019-07-1-800-046952	전**원	3,460,550	수령인 없음	
508	105301-2019-07-1-800-047208	신**금**주**회**	1,640,090	수령인 없음	
509	105301-2019-07-1-800-047318	(주)존**테**	2,454,110	수령인 없음	
510	105301-2019-07-1-800-047336	(주)명**씨**스	2,596,440	수령인 없음	
511	105301-2019-07-1-800-047501	주**회** *티**팩	654,010	기타	
512	105301-2019-07-1-800-047521	(주)이**테**	15,600	수령거부	
513	105301-2019-07-1-800-047662	신**모	5,580	수령거부	
514	105301-2019-07-1-800-047680	김**주	1,297,080	기타	
515	105301-2019-07-1-710-047704	문**선	1,291,390	수령인 없음	
516	105301-2019-07-1-710-047724	이**락	1,481,130	기타	
517	105301-2019-07-1-650-047806	윤**정	1,014,990	수령인 없음	
518	105301-2019-07-1-655-047839	주**회**두**엔**니**링	5,690	수령인 없음	
519	105301-2019-07-1-510-047980	(주)한**조**	9,070	수령인 없음	
520	105301-2019-07-1-582-048160	새**유**화**문**한**사	10,240	수령거부	
521	105302-2019-07-1-690-000114	소**영**조**법**	850,910	기타	
522	105302-2019-07-1-530-000152	전**범	3,350	수령인 없음	
523	105302-2019-07-1-700-000341	소**영**조**법**	1,183,800	기타	
524	105305-2019-07-1-520-000302	김**수	51,240	수령인 없음	
525	105305-2019-07-1-520-000373	최**한	97,910	수령인 없음	
526	105305-2019-07-1-520-000374	한**삼	65,270	수령인 없음	
527	105305-2019-07-1-520-000801	조**천	60,860	수령거부	
528	105305-2019-07-1-520-001848	황**영	322,640	수령인 없음	
529	105305-2019-07-1-520-002568	최**순	331,440	수령인 없음	
530	105305-2019-07-1-520-002577	이**화	331,440	수령인 없음	
531	105305-2019-07-1-520-003195	송**선	316,480	수령인 없음	
532	105305-2019-07-1-520-003344	전**배	309,680	기타	
533	105305-2019-07-1-520-003360	유**종	316,480	수령인 없음	
534	105305-2019-07-1-520-003374	김**자	316,480	수령인 없음	
535	105305-2019-07-1-520-003606	황**균	235,840	수령인 없음	
536	105305-2019-07-1-520-004307	박**윤	332,170	수령인 없음	
537	105305-2019-07-1-520-005405	최**환	331,440	수령인 없음	
538	105305-2019-07-1-520-005949	이**신	337,600	수령인 없음	
539	105305-2019-07-1-520-006918	공**정	165,710	수령인 없음	
540	105305-2019-07-1-520-007568	김**수	341,950	수령인 없음	
541	105305-2019-07-1-520-007572	김**혜	341,950	수령인 없음	

542	105305-2019-07-1-520-007578	김**호	341,950	수령인 없음	
543	105305-2019-07-1-520-007724	김**수	61,690	수령인 없음	
544	105305-2019-07-1-520-007884	주**라	325,640	수령인 없음	
545	105305-2019-07-1-520-007958	진**정	320,190	수령인 없음	
546	105305-2019-07-1-520-007984	윤**주	341,950	수령인 없음	
547	105305-2019-07-1-520-008349	김**수	293,000	수령인 없음	
548	105305-2019-07-1-520-008563	김**수	341,950	수령인 없음	
549	105305-2019-07-1-520-008737	신**림	325,640	수령인 없음	
550	105305-2019-07-1-520-009138	민**란	328,350	수령인 없음	
551	105305-2019-07-1-520-009159	성**영	328,350	수령인 없음	
552	105305-2019-07-1-520-009423	정**정	313,390	수령인 없음	
553	105305-2019-07-1-520-009663	권**미	325,640	수령인 없음	
554	105305-2019-07-1-520-009728	김**숙	313,390	수령인 없음	
555	105305-2019-07-1-520-009730	김**태	313,390	수령인 없음	
556	105305-2019-07-1-520-009734	정**미	313,390	수령인 없음	
557	105305-2019-07-1-520-010735	이**순	363,010	수령인 없음	
558	105305-2019-07-1-520-011210	송**걸	32,010	수령인 없음	
559	105305-2019-07-1-520-011466	주**회**아**중**	78,720	수령거부	
560	105305-2019-07-1-510-012002	김**연	146,100	수령거부	
561	105305-2019-07-1-510-012048	차**병	151,040	수령인 없음	
562	105305-2019-07-1-520-014698	박**홍	102,570	수령인 없음	
563	105305-2019-07-1-522-015102	주**리	64,990	수령인 없음	
564	105305-2019-07-1-522-015160	백**은	72,390	수령인 없음	
565	105305-2019-07-1-522-015323	장**권	55,780	수령거부	
566	105305-2019-07-1-522-015346	임**선	86,410	수령거부	
567	105305-2019-07-1-522-015444	김**원	17,660	수령인 없음	
568	105305-2019-07-1-522-015445	김**란	17,660	수령인 없음	
569	105305-2019-07-1-522-015764	박**용	31,550	수령거부	
570	105305-2019-07-1-522-015769	주**은	21,290	수령거부	
571	105305-2019-07-1-522-015878	우**한	51,840	수령거부	
572	105305-2019-07-1-522-015998	아**앤**컨**팅(주)	63,740	수령인 없음	
573	105305-2019-07-1-521-016288	주**웨**인**	88,380	수령인 없음	
574	105305-2019-07-1-521-016499	이**형	325,070	수령인 없음	
575	105305-2019-07-1-521-016869	김**화	9,580	수령인 없음	
576	105305-2019-07-1-521-016879	정**희	72,760	수령인 없음	
577	105305-2019-07-1-521-018058	김**숙	81,790	수령거부	
578	105305-2019-07-1-510-018851	김**순	102,550	수령인 없음	
579	105305-2019-07-1-510-019169	김**숙	59,000	수령인 없음	
580	105305-2019-07-1-510-019193	장**홍	71,050	수령거부	
581	105305-2019-07-1-510-019204	전**봉	64,860	수령인 없음	
582	105305-2019-07-1-510-020313	전**봉	42,650	수령인 없음	
583	105305-2019-07-1-510-021044	최**호	59,010	수령인 없음	
584	105305-2019-07-1-510-022288	김**현	49,370	수령인 없음	
585	105305-2019-07-1-510-022309	김**현	54,380	수령인 없음	
586	105305-2019-07-1-510-022548	서**은	49,710	수령인 없음	
587	105305-2019-07-1-510-022549	서**은	49,710	수령인 없음	
588	105305-2019-07-1-510-023853	김**영	502,270	수령인 없음	
589	105305-2019-07-1-510-023964	채**	41,160	수령거부	
590	105305-2019-07-1-510-024745	김**찬	69,110	수령인 없음	
591	105305-2019-07-1-510-024748	김**찬	70,350	수령인 없음	
592	105305-2019-07-1-510-025102	채**병	67,380	수령인 없음	
593	105305-2019-07-1-510-025170	정**경	57,640	수령거부	
594	105305-2019-07-1-510-025297	원**희	63,350	수령인 없음	
595	105305-2019-07-1-510-025357	차**란	44,820	수령인 없음	
596	105305-2019-07-1-510-025625	한**이	68,350	수령인 없음	
597	105305-2019-07-1-510-025643	이**화	83,100	수령인 없음	
598	105305-2019-07-1-510-026129	염**식	39,510	수령거부	
599	105305-2019-07-1-510-026133	염**식	23,090	수령거부	
600	105305-2019-07-1-510-026581	임**덕	65,590	수령인 없음	
601	105305-2019-07-1-510-026656	임**덕	73,370	수령인 없음	
602	105305-2019-07-1-510-027547	한**엽	87,990	수령거부	
603	105305-2019-07-1-510-027846	임**덕	65,420	수령인 없음	

604	105305-2019-07-1-510-028028	박**걸	76,710	수령인 없음	
605	105305-2019-07-1-510-028143	임**덕	69,790	수령인 없음	
606	105305-2019-07-1-510-028297	임**덕	70,160	수령인 없음	
607	105305-2019-07-1-510-028464	임**덕	89,200	수령인 없음	
608	105305-2019-07-1-510-028478	임**덕	86,320	수령인 없음	
609	105305-2019-07-1-510-029050	김**숙	80,740	수령인 없음	
610	105305-2019-07-1-520-029806	우**우	60,260	수령인 없음	
611	105305-2019-07-1-522-030803	임**덕	66,170	수령인 없음	
612	105305-2019-07-1-522-031947	차**근	70,470	수령인 없음	
613	105305-2019-07-1-522-031983	조**희	92,980	수령인 없음	
614	105305-2019-07-1-522-032667	임**덕	66,550	수령인 없음	
615	105305-2019-07-1-522-032692	임**덕	66,100	수령인 없음	
616	105305-2019-07-1-522-032983	윤**순	54,440	수령거부	
617	105305-2019-07-1-522-033428	한**연	36,590	수령거부	
618	105305-2019-07-1-522-033451	안**구	61,010	수령인 없음	
619	105305-2019-07-1-522-033475	노**원	57,950	수령인 없음	
620	105305-2019-07-1-522-034093	임**덕	54,900	수령인 없음	
621	105305-2019-07-1-522-034553	임**덕	67,260	수령인 없음	
622	105305-2019-07-1-521-035389	황**좌	59,660	수령거부	
623	105305-2019-07-1-521-035720	백**녀	53,750	수령거부	
624	105305-2019-07-1-510-036064	뉴**인**합**설(주)	59,590	수령거부	
625	105305-2019-07-1-510-036065	뉴**인**합**설(주)	59,590	수령거부	
626	105305-2019-07-1-510-036066	뉴**인**합**설(주)	68,940	수령거부	
627	105305-2019-07-1-510-036067	뉴**인**합**설(주)	68,940	수령거부	
628	105305-2019-07-1-510-036068	뉴**인**합**설(주)	67,690	수령거부	
629	105305-2019-07-1-510-036069	뉴**인**합**설(주)	72,350	수령거부	
630	105305-2019-07-1-510-036073	뉴**인**합**설(주)	66,400	수령거부	
631	105305-2019-07-1-510-036075	뉴**인**합**설(주)	62,850	수령거부	
632	105305-2019-07-1-510-036076	뉴**인**합**설(주)	69,350	수령거부	
633	105305-2019-07-1-510-036080	뉴**인**합**설(주)	66,400	수령거부	
634	105305-2019-07-1-510-036081	뉴**인**합**설(주)	66,400	수령거부	
635	105305-2019-07-1-510-036082	뉴**인**합**설(주)	62,850	수령거부	
636	105305-2019-07-1-510-036083	뉴**인**합**설(주)	69,350	수령거부	
637	105305-2019-07-1-510-036087	뉴**인**합**설(주)	66,400	수령거부	
638	105305-2019-07-1-550-036313	오**준	73,210	수령인 없음	
639	105305-2019-07-1-550-036470	김**식	35,210	수령거부	
640	105305-2019-07-1-550-037065	김**자	99,040	수령인 없음	
641	105305-2019-07-1-550-037095	이**미	373,570	기타	
642	105305-2019-07-1-550-037882	오**현	68,260	수령인 없음	
643	105305-2019-07-1-550-038176	최**철	60,690	수령거부	
644	105305-2019-07-1-550-038333	김**식	29,160	수령거부	
645	105305-2019-07-1-550-038928	도**광	69,160	수령인 없음	
646	105305-2019-07-1-550-038950	문**식	55,180	수령인 없음	
647	105305-2019-07-1-550-038953	소**재	50,160	수령인 없음	
648	105305-2019-07-1-550-039153	이**숙	86,540	수령거부	
649	105305-2019-07-1-550-039304	임**덕	76,270	수령인 없음	
650	105305-2019-07-1-550-039664	권**원	70,910	수령인 없음	
651	105305-2019-07-1-550-039792	송**연	47,410	수령인 없음	
652	105305-2019-07-1-550-040315	안**영	109,800	수령거부	
653	105305-2019-07-1-550-040486	김**길	104,570	수령거부	
654	105305-2019-07-1-550-040680	성**(주)	56,000	수령인 없음	
655	105305-2019-07-1-550-040944	맹**나	47,220	수령거부	
656	105305-2019-07-1-550-040969	신**균	30,490	수령거부	
657	105305-2019-07-1-550-041353	조**임	87,350	수령인 없음	
658	105305-2019-07-1-550-042016	박**숙	88,400	수령인 없음	
659	105305-2019-07-1-540-044476	김**자	43,370	수령인 없음	
660	105305-2019-07-1-540-044677	백**우	87,290	수령인 없음	
661	105305-2019-07-1-540-044778	김**덕	54,410	수령거부	
662	105305-2019-07-1-540-044829	김**자	41,630	수령인 없음	
663	105305-2019-07-1-540-044850	오**준	48,190	수령인 없음	
664	105305-2019-07-1-540-045858	문**숙	43,370	수령거부	
665	105305-2019-07-1-551-047101	김**용	60,000	수령인 없음	

666	105305-2019-07-1-551-047227	유**숙	92,270	수령거부	
667	105305-2019-07-1-550-047671	김**도	51,340	수령인 없음	
668	105305-2019-07-1-550-047777	임**태	75,120	수령인 없음	
669	105305-2019-07-1-550-047865	주**회**한**중**권**팅	80,020	수령인 없음	
670	105305-2019-07-1-550-047906	한**근	73,160	수령거부	
671	105305-2019-07-1-550-047907	이**미	59,170	수령인 없음	
672	105305-2019-07-1-551-048337	문**숙	105,470	수령거부	
673	105305-2019-07-1-551-048884	(주)생**부**산**탁	357,860	수취인,주소,가소,영입소 불명	
674	105305-2019-07-1-551-049703	성**(주)	155,490	수령인 없음	
675	105305-2019-07-1-551-050027	허**순	61,690	수령인 없음	
676	105305-2019-07-1-530-051363	조**우	55,280	수령거부	
677	105305-2019-07-1-530-051441	정**지	94,170	수령거부	
678	105305-2019-07-1-551-052674	신**갑	35,210	수령인 없음	
679	105305-2019-07-1-551-052677	조**희	54,410	수령인 없음	
680	105305-2019-07-1-551-052680	유**호	57,640	수령인 없음	
681	105305-2019-07-1-551-052994	김**윤	74,830	수령거부	
682	105305-2019-07-1-551-053214	최**자	88,360	수령인 없음	
683	105305-2019-07-1-551-053319	허**행	94,650	수령거부	
684	105305-2019-07-1-530-054272	이**연	60,860	수령인 없음	
685	105305-2019-07-1-530-054932	이**자	94,090	수령인 없음	
686	105305-2019-07-1-530-055197	김**숙	98,190	수령인 없음	
687	105305-2019-07-1-530-055934	홍**표	85,430	수령인 없음	
688	105305-2019-07-1-530-056955	한**희	439,560	수령인 없음	
689	105305-2019-07-1-530-057276	박**욱	413,820	수령인 없음	
690	105305-2019-07-1-530-057314	(주)생**부**산**탁	437,970	수령인 없음	
691	105305-2019-07-1-530-057685	김**현	74,380	수령인 없음	
692	105305-2019-07-1-530-058390	김**현	77,550	수령인 없음	
693	105305-2019-07-1-530-058991	임**덕	78,720	수령인 없음	
694	105305-2019-07-1-551-059816	(주)에**프**	84,020	수령거부	
695	105305-2019-07-1-551-060718	강**숙	195,520	수령거부	
696	105305-2019-07-1-551-060783	강**숙	206,390	수령거부	
697	105305-2019-07-1-551-062781	소**금	61,500	수령거부	
698	105305-2019-07-1-530-067173	황**남	79,390	수령인 없음	
699	105305-2019-07-1-530-067244	이**경	41,780	수령인 없음	
700	105305-2019-07-1-530-067245	이**자	41,780	수령인 없음	
701	105305-2019-07-1-530-067246	이**영	41,780	수령인 없음	
702	105305-2019-07-1-550-068196	오**원	109,920	수령거부	
703	105305-2019-07-1-550-068464	황**미	137,380	수령인 없음	
704	105305-2019-07-1-550-068465	황**미	137,380	수령인 없음	
705	105305-2019-07-1-550-068720	정**엽	88,660	수령인 없음	
706	105305-2019-07-1-540-070915	마**해	209,440	수령인 없음	
707	105305-2019-07-1-540-071016	강**숙	163,510	수령거부	
708	105305-2019-07-1-540-071485	강**숙	152,020	수령거부	
709	105305-2019-07-1-570-072549	김**현	75,510	수령인 없음	
710	105305-2019-07-1-570-072704	김**호	73,210	수령인 없음	
711	105305-2019-07-1-570-072720	김**호	69,710	수령인 없음	
712	105305-2019-07-1-570-073068	윤**호	67,100	수령인 없음	
713	105305-2019-07-1-570-073980	이**원	71,430	수령거부	
714	105305-2019-07-1-570-074105	정**암	86,760	수령인 없음	
715	105305-2019-07-1-570-074357	유**오	61,520	수령인 없음	
716	105305-2019-07-1-570-074560	김**정	97,770	수령인 없음	
717	105305-2019-07-1-570-074568	손**철	58,450	수령거부	
718	105305-2019-07-1-570-076684	한**엽	89,190	수령거부	
719	105305-2019-07-1-570-076930	신**성	60,280	수령인 없음	
720	105305-2019-07-1-581-077225	소**일	106,920	수령인 없음	
721	105305-2019-07-1-581-077469	김**규	61,930	수령인 없음	
722	105305-2019-07-1-581-077470	김**진	61,930	수령인 없음	
723	105305-2019-07-1-581-078624	박**상	118,200	수령인 없음	
724	105305-2019-07-1-581-079030	유**은	155,870	수령거부	
725	105305-2019-07-1-581-079113	소**일	124,570	수령인 없음	
726	105305-2019-07-1-581-079275	김**래	127,930	수령거부	

727	105305-2019-07-1-581-079742	신**아	71,950	수령거부	
728	105305-2019-07-1-581-080718	이**욱	75,840	수령거부	
729	105305-2019-07-1-581-081205	전**자	88,830	수령인 없음	
730	105305-2019-07-1-570-084536	만**중**쇼**재**축**비**업** **합	108,960	수령인 없음	
731	105305-2019-07-1-580-084775	정**택	86,190	수령인 없음	
732	105305-2019-07-1-580-084988	김**일	100,650	수령인 없음	
733	105305-2019-07-1-580-085018	정**택	81,230	수령인 없음	
734	105305-2019-07-1-580-085068	강**준	24,620	수령거부	
735	105305-2019-07-1-580-085257	유**희	92,890	수령거부	
736	105305-2019-07-1-580-085534	정**순	74,270	수령인 없음	
737	105305-2019-07-1-580-085587	김**경	84,890	수령거부	
738	105305-2019-07-1-580-086069	정**	55,170	수령인 없음	
739	105305-2019-07-1-580-086081	(주)아**다**하**징	40,260	수령거부	
740	105305-2019-07-1-580-086160	박**중	57,950	수령거부	
741	105305-2019-07-1-580-086293	김**만	69,480	수령거부	
742	105305-2019-07-1-580-086334	이**구	54,600	수령인 없음	
743	105305-2019-07-1-580-086394	이**진	17,550	수령거부	
744	105305-2019-07-1-580-086395	이**우	17,550	수령거부	
745	105305-2019-07-1-580-086617	북**환	5,440	수령거부	
746	105305-2019-07-1-580-086717	김**권	94,340	수령인 없음	
747	105305-2019-07-1-580-087470	이**수	154,470	수령인 없음	
748	105305-2019-07-1-580-088267	김**식	90,690	수령거부	
749	105305-2019-07-1-580-088723	임**덕	57,950	수령인 없음	
750	105305-2019-07-1-580-089073	지**환	51,840	수령거부	
751	105305-2019-07-1-580-089081	이**원	48,790	수령거부	
752	105305-2019-07-1-570-089801	박**일	117,180	수령거부	
753	105305-2019-07-1-570-089806	이**춘	117,180	수령거부	
754	105305-2019-07-1-570-089808	박**숙	117,180	수령거부	
755	105305-2019-07-1-582-090402	이**욱	84,050	수령거부	
756	105305-2019-07-1-582-090735	안**호	54,900	수령인 없음	
757	105305-2019-07-1-582-090793	노**석	36,590	수령거부	
758	105305-2019-07-1-582-090830	손**자	36,590	수령인 없음	
759	105305-2019-07-1-582-091481	임**덕	57,950	수령인 없음	
760	105305-2019-07-1-582-091581	윤**지	75,050	수령인 없음	
761	105305-2019-07-1-582-091886	이**환	68,170	수령인 없음	
762	105305-2019-07-1-582-093027	염**호	158,200	수령인 없음	
763	105305-2019-07-1-582-093333	정**영	104,620	수령거부	
764	105305-2019-07-1-582-093343	이**성	146,360	수령거부	
765	105305-2019-07-1-582-094510	홍**숙	90,270	수령거부	
766	105305-2019-07-1-582-094838	전**미	84,480	수령거부	
767	105305-2019-07-1-582-094859	(주)생**부**산**탁	83,270	수령거부	
768	105305-2019-07-1-582-095022	정**자	6,080	수령거부	
769	105305-2019-07-1-560-095563	임**덕	54,900	수령인 없음	
770	105305-2019-07-1-560-095735	김**호	44,520	수령거부	
771	105305-2019-07-1-560-096179	전**석	48,790	수령인 없음	
772	105305-2019-07-1-582-096356	고**만	70,160	수령거부	
773	105305-2019-07-1-582-096616	천**경	54,900	수령거부	
774	105305-2019-07-1-582-096846	이**미	44,980	수령인 없음	
775	105305-2019-07-1-582-097530	박**현	48,030	수령인 없음	
776	105305-2019-07-1-560-098853	현**숙	64,050	수령인 없음	
777	105305-2019-07-1-560-099271	전**선	88,580	수령거부	
778	105305-2019-07-1-560-100314	원**	51,840	수령인 없음	
779	105305-2019-07-1-560-101043	노**욱	99,480	수령거부	
780	105305-2019-07-1-560-101434	최**성	101,670	수령인 없음	
781	105305-2019-07-1-560-101760	이**례	55,990	수령인 없음	
782	105305-2019-07-1-560-101788	이**현	54,820	수령인 없음	
783	105305-2019-07-1-560-102312	최**성	55,990	수령인 없음	
784	105305-2019-07-1-583-104533	호**기	156,390	수령인 없음	
785	105305-2019-07-1-583-105701	손**민	181,350	수령거부	
786	105305-2019-07-1-583-106177	정**규	152,870	수령인 없음	
787	105305-2019-07-1-583-106481	김**순	156,830	수령거부	

788	105305-2019-07-1-583-107679	김**섭	55,650	수령인 없음	
789	105305-2019-07-1-583-109639	권**록	82,290	수령인 없음	
790	105305-2019-07-1-583-110911	J*N*H*N*J*	69,050	수령거부	
791	105305-2019-07-1-583-111704	농**회**법**주**회**참**	95,310	수령거부	
792	105305-2019-07-1-570-112395	김**식	112,110	수령거부	
793	105305-2019-07-1-580-114511	김**숙	117,370	수령인 없음	
794	105305-2019-07-1-570-118085	이**범	316,800	수령인 없음	
795	105305-2019-07-1-650-118895	송**호	48,790	수령인 없음	
796	105305-2019-07-1-650-119016	주**회**타**에**코**아	99,680	수령거부	
797	105305-2019-07-1-650-119924	김**남	18,270	수령거부	
798	105305-2019-07-1-650-119993	주**회** **진**이**패**	62,660	수령인 없음	
799	105305-2019-07-1-650-120512	김**욱	145,250	수령거부	
800	105305-2019-07-1-650-121226	정**미	102,030	수령인 없음	
801	105305-2019-07-1-650-123546	박**성	316,240	수령인 없음	
802	105305-2019-07-1-650-123606	한**조	316,240	수령인 없음	
803	105305-2019-07-1-650-123607	김**재	316,240	수령인 없음	
804	105305-2019-07-1-650-123672	이**례	316,240	수령인 없음	
805	105305-2019-07-1-650-123846	백**춘	316,240	수령인 없음	
806	105305-2019-07-1-660-124821	이**원	67,810	수령거부	
807	105305-2019-07-1-660-124967	김**희	70,710	수령거부	
808	105305-2019-07-1-660-124986	곽**춘	69,35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 불명	
809	105305-2019-07-1-660-125085	박**준	76,380	수령인 없음	
810	105305-2019-07-1-660-125571	이**호	61,650	수령거부	
811	105305-2019-07-1-660-125612	이**현	64,040	수령인 없음	
812	105305-2019-07-1-660-126585	서**권	65,090	수령거부	
813	105305-2019-07-1-660-127773	이**철	36,000	수령거부	
814	105305-2019-07-1-660-128411	김**남	69,330	수령거부	
815	105305-2019-07-1-660-128424	김**규	45,89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 불명	
816	105305-2019-07-1-660-128863	유**란	58,060	수령거부	
817	105305-2019-07-1-660-129839	김**숙	441,880	수령인 없음	
818	105305-2019-07-1-660-129840	이**민	441,880	수령인 없음	
819	105305-2019-07-1-660-129903	박**양	774,930	수령인 없음	
820	105305-2019-07-1-660-129982	김**구	63,720	수령인 없음	
821	105305-2019-07-1-660-129990	김**구	41,640	수령인 없음	
822	105305-2019-07-1-660-130156	권**	75,130	수령인 없음	
823	105305-2019-07-1-660-130340	김**구	51,220	수령인 없음	
824	105305-2019-07-1-660-131302	정**태	76,820	수령거부	
825	105305-2019-07-1-660-131338	박**길	80,310	수령거부	
826	105305-2019-07-1-660-131865	임**길	445,210	수령인 없음	
827	105305-2019-07-1-690-132660	정**혁	235,430	수령인 없음	
828	105305-2019-07-1-690-133741	송**경	100,850	수령거부	
829	105305-2019-07-1-800-133911	최**재	106,530	수령인 없음	
830	105305-2019-07-1-690-134126	서**연	83,610	수령거부	
831	105305-2019-07-1-690-134143	(주)태**건**	94,540	수령인 없음	
832	105305-2019-07-1-700-134529	최**숙	93,320	수령인 없음	
833	105305-2019-07-1-700-135085	권**형	154,660	수령인 없음	
834	105305-2019-07-1-700-135351	김**남	163,850	수령인 없음	
835	105305-2019-07-1-700-135627	민**환	159,960	수령인 없음	
836	105305-2019-07-1-700-136114	이**현	52,200	수령인 없음	
837	105305-2019-07-1-690-138020	강**원	161,880	수령거부	
838	105305-2019-07-1-690-138773	권**수	148,050	수령인 없음	
839	105305-2019-07-1-690-140804	김**미	96,610	수령거부	
840	105305-2019-07-1-690-142016	유**희	660,880	기타	
841	105305-2019-07-1-690-142072	박**주	210,260	수령인 없음	
842	105305-2019-07-1-690-144289	이**명	326,350	수령인 없음	
843	105305-2019-07-1-690-144290	변**원	326,390	수령인 없음	
844	105305-2019-07-1-690-144293	이**선	652,780	수령인 없음	
845	105305-2019-07-1-690-144526	김**희	318,620	수령인 없음	
846	105305-2019-07-1-690-144575	김**현	311,830	수령인 없음	

847	105305-2019-07-1-690-144909	장**순	351,490	기타	
848	105305-2019-07-1-690-145003	배**규	341,980	수령인 없음	
849	105305-2019-07-1-690-145023	황**주	351,490	수령인 없음	
850	105305-2019-07-1-690-145124	이**락	642,320	기타	
851	105305-2019-07-1-700-146624	양**만	337,040	기타	
852	105305-2019-07-1-700-147372	주**회**수**아**피	79,990	수령인 없음	
853	105305-2019-07-1-700-147379	주**회**수**아**피	63,820	수령인 없음	
854	105305-2019-07-1-700-147419	주**회**수**아**피	98,560	수령인 없음	
855	105305-2019-07-1-700-147469	주**회**수**아**피	102,250	수령인 없음	
856	105305-2019-07-1-700-147483	주**회**수**아**피	102,250	수령인 없음	
857	105305-2019-07-1-700-147578	주**회**수**아**피	98,560	수령인 없음	
858	105305-2019-07-1-700-147658	양**국	99,420	수령인 없음	
859	105305-2019-07-1-700-147710	주**회**수**아**피	160,450	수령인 없음	
860	105305-2019-07-1-700-147792	주**회**수**아**피	77,390	수령인 없음	
861	105305-2019-07-1-710-148599	한**철	165,650	수령인 없음	
862	105305-2019-07-1-710-148602	한**철	165,650	수령인 없음	
863	105305-2019-07-1-710-148721	한**철	165,650	수령인 없음	
864	105305-2019-07-1-690-148755	이**자	794,360	수령인 없음	
865	105305-2019-07-1-710-149406	당**영	343,040	수령인 없음	
866	105305-2019-07-1-710-149659	김**자**4*8*9*	146,210	수령인 없음	
867	105305-2019-07-1-710-150262	이**은	444,420	수령인 없음	
868	105305-2019-07-1-710-151275	김**란	316,320	수령인 없음	
869	105305-2019-07-1-710-151945	김**철	195,590	수령거부	
870	105305-2019-07-1-710-153628	김**식	258,840	수령인 없음	
871	105305-2019-07-1-710-154149	박**영	225,380	수령인 없음	
872	105305-2019-07-1-710-154431	나**환	366,370	수령인 없음	
873	105305-2019-07-1-710-155013	박**숙	460,920	수령인 없음	
874	105305-2019-07-1-710-155384	손**원	375,680	이시감	
875	105305-2019-07-1-710-155644	김**순	611,950	수령인 없음	
876	105305-2019-07-1-710-155698	최**숙	692,7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877	105305-2019-07-1-710-155966	조**숙	515,100	수령인 없음	
878	105305-2019-07-1-710-156208	박**자	497,430	수령인 없음	
879	105305-2019-07-1-710-156404	최**심	325,040	수령인 없음	
880	105305-2019-07-1-710-156489	권**복	402,300	기타	
881	105305-2019-07-1-540-158682	지**섭	278,220	수령인 없음	
882	105305-2019-07-1-540-158868	주**윤	263,650	수령인 없음	
883	105305-2019-07-1-540-159062	김**심	366,550	수령인 없음	
884	105305-2019-07-1-540-159102	W*N* *I* *U*Y*M*E*	339,360	수령인 없음	
885	105305-2019-07-1-540-159382	박**숙	407,000	수령인 없음	
886	105305-2019-07-1-540-160037	정**성	312,400	수령인 없음	
887	105305-2019-07-1-540-160400	박**주	344,170	기타	
888	105305-2019-07-1-540-160531	서**성	366,550	수령인 없음	
889	105305-2019-07-1-710-161481	구**회	396,910	수령인 없음	
890	105305-2019-07-1-710-161491	오**석	426,950	수령인 없음	
891	105305-2019-07-1-710-161748	이**재	332,770	수령인 없음	
892	105305-2019-07-1-655-169595	최**숙	274,900	수령인 없음	
893	105305-2019-07-1-650-172560	전**순	81,140	수령인 없음	
894	105305-2019-07-1-660-173273	정**철	65,260	수령인 없음	
895	105305-2019-07-1-710-173604	김**일	504,370	수령인 없음	
896	105305-2019-07-1-710-173926	강**빈	425,570	수령인 없음	
897	105305-2019-07-1-710-174211	박**소	348,040	기타	
898	105305-2019-07-1-710-174310	민**환	184,440	수령인 없음	
899	105305-2019-07-1-710-174379	황**현	189,450	수령인 없음	
900	105305-2019-07-1-570-174884	박**만	109,270	수령거부	
901	105305-2019-07-1-650-176662	강**재	689,650	수령인 없음	
902	105305-2019-07-1-510-176978	정**수	193,430	수령인 없음	
903	105305-2019-07-1-510-177993	곽**경	123,080	수령거부	
904	105305-2019-07-1-510-178245	김**호	231,260	수령거부	
905	105305-2019-07-1-510-178586	이**자	310,010	수령인 없음	
906	105305-2019-07-1-510-178616	안**운	310,010	수령인 없음	
907	105305-2019-07-1-510-179223	김**순	497,660	수령인 없음	

908	105305-2019-07-1-510-179224	이**균	497,660	수령인 없음	
909	105305-2019-07-1-510-179274	서**아	52,420	수령인 없음	
910	105305-2019-07-1-510-179971	장**준	79,920	수령인 없음	
911	105305-2019-07-1-522-180871	석**원	400,8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912	105305-2019-07-1-550-181193	김**순	310,530	수령인 없음	
913	105305-2019-07-1-530-181502	김**순	324,130	수령인 없음	
914	105305-2019-07-1-530-181627	정**주	432,620	수령인 없음	
915	105305-2019-07-1-530-181683	정**식	148,770	수령인 없음	
916	105305-2019-07-1-550-181917	김**식	31,260	수령거부	
917	105305-2019-07-1-570-181948	김**정	22,950	수령거부	
918	105305-2019-07-1-560-182135	김**욱	15,470	수령인 없음	
919	105305-2019-07-1-560-182136	김**선	15,470	수령인 없음	
920	105305-2019-07-1-560-182146	김**욱	81,780	수령인 없음	
921	105305-2019-07-1-560-182147	김**선	81,780	수령인 없음	
922	105305-2019-07-1-582-182312	김**수	63,920	수령거부	
923	105305-2019-07-1-650-182966	김**욱	7,020	수령인 없음	
924	105305-2019-07-1-650-182967	김**선	7,020	수령인 없음	
925	105305-2019-07-1-650-182977	김**욱	73,990	수령인 없음	
926	105305-2019-07-1-650-182978	김**선	73,990	수령인 없음	
927	105305-2019-07-1-650-182991	김**욱	10,710	수령인 없음	
928	105305-2019-07-1-650-182992	김**선	10,710	수령인 없음	
929	105305-2019-07-1-650-183005	김**욱	30,430	수령인 없음	
930	105305-2019-07-1-650-183007	김**선	30,430	수령인 없음	
931	105305-2019-07-1-650-183238	서**자	49,400	수령거부	
932	105305-2019-07-1-660-183460	구**경	317,750	수령인 없음	
933	105305-2019-07-1-690-183553	조**전	353,730	수령인 없음	
934	105305-2019-07-1-690-183876	정**필	693,440	수령인 없음	
935	105305-2019-07-1-690-183965	최**석	550,360	기타	
936	105305-2019-07-1-690-184000	김**수	348,440	수령인 없음	
937	105305-2019-07-1-690-184018	함**욱	342,930	수령인 없음	
938	105305-2019-07-1-690-184107	권**자	378,600	기타	
939	105305-2019-07-1-690-184109	(주)설**	527,700	수령인 없음	
940	105305-2019-07-1-690-184126	장**경	567,870	수령인 없음	
941	105305-2019-07-1-690-184152	오**준	324,290	수령인 없음	
942	105305-2019-07-1-690-184157	김**하	410,650	수령인 없음	
943	105305-2019-07-1-510-184698	오**식	377,440	수령인 없음	
944	105305-2019-07-1-510-185339	이**혁	377,080	수령인 없음	
945	105305-2019-07-1-650-186612	김**기	453,360	수령인 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378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이* 외 2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9년 7월 수시분 및 19년 5월 독촉
취득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19년 7월 수시분 및 19년 5월 독촉
취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19.7.31.을 2019.9.2.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9. 8.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취득세 2019년 7월 수시분 및 2019년 5월 독촉분 공시송달내역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1	120111-*****	(주)스마트솔**	1015012019072800043580	수취인불명	4,212,500
2	930530-*****	이*	1015012019052551030496	폐문부재	1,028,420
3	750320-*****	임달* 외 1	1015012019052700030616	폐문부재	8,077,18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381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1일

남 동 구 청 장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기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순용어 정비, 우선계약 순위[별표] 조정 및 사용료 징수 기준 변경
 - 설치관리자“지방공기업의 장”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안 제4,5,6조)
 - 신청자격“장애등급 2급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안 제5조)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순위[별표] 일부내용(안 제6조)
 - 위탁운영가능한 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안 제7조)
 - 계약해지 관련 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안 제8조)
 - 사용료의 징수 기준“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을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572, FAX 453-58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7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시행(2019. 7. 1.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지자체의 서비스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수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설치관리자“지방공기업의 장”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변경(안 제4,5,6조)
- 신청자격‘장애등급 2급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안 제5조)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순위[별표] 일부내용조정(안 제6조)
- 위탁운영가능한 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을“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안 제7조)
- 계약해지 관련 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으로 변경(안 제8조)
- 사용료의 징수 기준“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을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으로 변경(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지방공기업”을 “도시관리공단”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지방공기업의 장”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공기업의 장”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기업의 장”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으로 한다.

제8조 중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를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로 한다.

제9조 중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를 “방법은 「납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제2조 및 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u>장애인</u>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사람	<u>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u>
3					<u>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u>
4					<u>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u>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u>의하여</u>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구 <u>지방공기업</u>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1조(목적) ----- ----- ----- ----- ----- ----- ----- ----- <u>따</u> <u>라</u> ----- ----- ----- ----- ----- ----- ----- -----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도시관리공단-----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따라
른다.

제4조(사전공고) -----
-----도
시관리공단 이사장-----

----- 따라 -----
-----.

제5조(신청) -----

----- 사
람으로서 -----
-----도시관리
공단 이사장-----.

1. -----
-----도시관
리공단 이사장-----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신청 할 경우에 한함)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6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우선계약) ①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 -----.
②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장애인 등이 두 명 이상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 ----- -- 따라 ----- ----- ----- -----.
③ 제1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 또는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계약만료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제7조(사업자의 의무) ----- ----- ----- -----

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 ----- ----- ----- ----- -----.
제8조(계약해지) 설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해지) ----- -----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 ----- ----- 방법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제2조 및 제6조 관련)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제2조 및 제6조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현행과 같음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사람	현행과 같음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3	<삭제>				현행과 같음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4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별첨 1) 개정 전_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별첨 2) 개정 후_장애인의 장애정도. 끝.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97호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2(2005.01.11)호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구역으로 선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0(2009.12.21)호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변경) 고시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3-67(2013.7.29.)호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8-51(2018.04.20.)호로 고시된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 7.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일원 11필지(만수동72-46번지 외 10필지)
 - 면 적 : 7,227㎡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선화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2층 (만수동,만수쇼핑)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0개월(변경있음)
 - 시행기간 : (기정) 인가고시일로부터 ~ 2017. 7. 28
(변경) 인가고시일로부터 ~ 2022. 11. 28
- 사업시행인가일 : 2013년 7월 29일(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변경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업 명	대지면적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7,227.0㎡	근린 및 판매시설	69.53%	381.8%	41.7m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전용면적	세대수	비 고
-㎡	-	임대 (-세대)
-㎡	-	분양 (-세대)
-계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정 비 기 반 시 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에 무상양도)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 로	-	도 로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해당사항 없음
	공 원	-	주 차 장	-		
	합 계	-	합 계	-		

10. 기타 관계도서 : 게재 생략 【남동구청 생활경제과(☎453-2664)에 비치함】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8-98호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의12 제4항에 따라 직권 부여한 상세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24(논현동)
(101,201,202,,203,204,301,302,303)외 29건

번호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통보구분	부여구분
별 도 열 람(3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변경 등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 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동·층·호)를 임의 사용하여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민원 발생 및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공적장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접수번호	도로명주소	지하여부	층명칭	호명칭
21686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24 (논현동)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3	303
		지상	3	302
		지상	2	204
		지상	2	203
		지상	2	205
		지상	1	101
21685	인천광역시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11-23 (논현동)	지상	3	301
		지상	1	101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2	203
		지상	3	301
		지상	4	403
		지상	4	404
216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21 (논현동)	지상	3	302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3	301
2168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20 (논현동)	지상	1	101
		지상	2	204
		지상	2	203
		지상	2	202
		지상	2	201
		지상	1	101
		지상	3	301
		지상	1	101
216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16 (논현동)	지상	3	301
		지상	1	102
		지상	2	201
		지상	2	202
216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12 (논현동)	지상	1	101
		지상	2	202
		지상	3	301
		지상	3	302
2168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11 (논현동)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3	301
		지상	3	302
		지상	1	101
		지상	3	303
		지상	3	303
		지상	2	206
2167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9 (논현동)	지상	3	301
		지상	3	304
		지상	3	302
		지상	2	205
		지상	2	204
		지상	2	203
		지상	2	202
		지상	2	201
		지상	1	101
		지상	3	303
		지상	3	304
		지상	1	101
2167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7 (논현동)	지상	3	301
		지상	3	301
		지상	2	205
		지상	2	205

		지상	2	204
		지상	3	302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2	203
2167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4 (논현동)	지상	3	301
		지상	2	202
		지상	2	201
		지상	1	101
21676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3 (논현동)	지상	2	202
		지상	3	301
		지상	1	101
		지상	2	201
216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1 (논현동)	지상	3	301
		지상	2	202
		지상	1	102
		지상	2	201
		지상	1	101
216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8 (논현동)	지상	3	301
		지상	2	202
		지상	1	101
		지상	2	201
216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3-20 (논현동)	지상	2	202
		지상	2	201
		지상	1	101
		지상	3	301
216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3-12 (논현동)	지상	2	205
		지상	2	206
		지상	3	301
		지상	3	302
		지상	3	303
		지상	3	304
		지상	2	204
		지상	2	203
		지상	2	202
		지상	1	101
216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20 (논현동)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3	301
		지상	1	101
216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18 (논현동)	지상	1	102
		지상	3	301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1	103
		지상	3	302
216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16 (논현동)	지상	1	101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2	203
		지상	3	301
216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15 (논현동)	지상	1	101
		지상	3	301
		지상	1	102
		지상	2	201
		지상	3	302
		지상	2	202

216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13-1 (논현동)	지상	1	101
		지상	3	302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3	301
216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12 (논현동)	지상	1	101
		지상	2	202
		지상	2	203
		지상	2	204
		지상	3	301
		지상	2	201
		지상	3	303
		지상	3	302
2166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10 (논현동)	지상	2	205
		지상	4	402
		지상	3	306
		지상	3	305
		지상	3	304
		지상	3	303
		지상	3	302
		지상	3	301
		지상	2	206
		지상	2	205
		지상	2	204
		지상	2	203
		지상	2	202
		지상	2	201
		지상	4	401
		지상	3	301
216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8 (논현동)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1	101
		지상	1	102
		지상	1	103
216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6-12 (논현동)	지상	1	102
		지상	1	101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2	203
		지상	3	301
		지상	4	401
		지상	4	402
		지상	3	302
2166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6-11 (논현동)	지상	2	202
		지상	2	203
		지상	2	204
		지상	2	205
		지상	3	301
		지상	3	302
		지상	3	303
		지상	3	304
		지상	3	305
		지상	4	401
		지상	4	402
		지상	4	403
		지상	1	101
		지상	2	201
		지상	2	203
2166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6-5 (논현동)	지상	3	305
		지상	3	304

		지상	3	303
		지상	1	101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4	402
		지상	2	204
		지상	2	205
		지상	3	301
		지상	3	302
216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4 (논현동)	지상	3	301
		지상	2	202
		지상	2	201
		지상	1	101
216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2-15 (논현동)	지상	1	101
		지상	1	102
		지상	3	302
		지상	2	201
		지상	3	301
216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2-11 (논현동)	지상	3	301
		지상	2	202
		지상	1	102
		지상	1	101
		지상	2	201
216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2-7 (논현동)	지상	2	202
		지상	2	201
		지상	1	101
		지상	3	301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9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3-1 외 93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65-1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9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3-1 (만수동)	20090706	고려시대 인천의 이름인 인주를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인주대로 913-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13-1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37-2 (만수동)	20090706	고려시대 인천의 이름인 인주를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인주대로 837-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37-2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37-3 (만수동)	20090706	고려시대 인천의 이름인 인주를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인주대로 837-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4-1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아암대로 1604-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04-1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6-1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아암대로 1606-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06-1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6-2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아암대로 1606-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06-2를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6-3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아암대로 1606-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06-3을 건물번호로 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6-4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아암대로 1606-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06-4을 건물번호로 부여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6-5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아암대로 1606-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06-5를 건물번호로 부여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6-6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아암대로 1606-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06-6을 건물번호로 부여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3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34-1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아암대로 1634-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34-1을 건물번호로 부여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3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34-2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아암대로 1634-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34-2을 건물번호로 부여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3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34-3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아암대로 1634-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34-3을 건물번호로 부여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3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34-4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변 출입구가 아암대로 1634-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34-4을 건물번호로 부여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80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13-1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아암대로 1613-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13-1을 건물번호로 부여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80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13-2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아암대로 1613-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13-2을 건물번호로 부여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80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13-3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아암대로 1613-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13-3을 건물번호로 부여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80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13-4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아암대로 1613-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13-4을 건물번호로 부여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80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13-5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아암대로 1613-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13-5을 건물번호로 부여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80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13-6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아암대로 1613-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13-6을 건물번호로 부여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7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50-1 (논현동)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 250-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50-1을 건물번호로 부여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8-1 (구월동)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 778-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78-1을 건물번호로 부여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7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75-1 (간석동)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 875-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75-1을 건물번호로 부여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7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80-1 (간석동)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 880-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80-1을 건물번호로 부여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8-1 (구월동)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 808-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08-1을 건물번호로 부여	
4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0-1 (간석동)	20090710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인로 670-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70-1을 건물번호로 부여	
4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0-2 (간석동)	20090710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인로 670-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70-2을 건물번호로 부여	
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05-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670-1 (장수동)	20090710	수원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수인로 3670-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670-1을 건물번호로 부여	
4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36-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6-1 (구월동)	20090706	구월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 126-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26-1을 건물번호로 부여	

- 275 -

4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04-1 (구월동)	20090706	구월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 204-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4-1을 건물번호로 부여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0-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74-1 (간석동)	20090706	구월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 74-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4-1을 건물번호로 부여	
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51-1 (구월동)	20090706	구월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 251-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51-1을 건물번호로 부여	
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0-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09-1 (구월동)	20090706	구월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 209-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9-1을 건물번호로 부여	
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64-2 (만수동)	20090706	구월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 364-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64-2을 건물번호로 부여	
4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3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27-1 (구월동)	20090706	인천과 하와이를 상징하는 인하대에서 시작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인하로 427-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27-1을 건물번호로 부여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1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27-1 (논현동)	2009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227-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27-1을 건물번호로 부여	
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6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93-1 (구월동)	2009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793-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93-1을 건물번호로 부여	
5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2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96-1 (구월동)	2009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796-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96-1을 건물번호로 부여	
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7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26-1 (만수동)	20090706	백제, 고구려, 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인천의 옛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매소홀로 1026-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26-1을 건물번호로 부여	
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3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남로 34-1 (구월동)	20090706	연수구와 남구, 남동구 경계에 있는 도로로 구명칭을 조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연남로 34-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4-1을 건물번호로 부여	
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27-1 (논현동)	20091116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가족과 의논하며 넘던 고개라는 지역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고개로 127-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27-1을 건물번호로 부여	
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8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78-1 (논현동)	20091116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가족과 의논하며 넘던 고개라는 지역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고개로 78-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8-1을 건물번호로 부여	

- 276 -

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9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8-1 (만수동)	20091116	행정구역명(만수동)을 이용하여 만수로로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로 18-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8-1을 건물번호로 부여	
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9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46-1 (만수동)	20091116	행정구역명(만수동)을 이용하여 만수로로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로 46-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6-1을 건물번호로 부여	
5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9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4-2 (만수동)	20091116	행정구역명(만수동)을 이용하여 만수로로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로 14-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4-2을 건물번호로 부여	
6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61-1 (만수동)	20091116	만수로의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서로 61-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1-1을 건물번호로 부여	
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3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0-1 (구월동)	20091116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미래로 10-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1을 건물번호로 부여	
6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09-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21-1 (구월동)	20091116	성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는 옛 지역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성말로 21-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1을 건물번호로 부여	
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9-1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소래역(예정)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 29-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1을 건물번호로 부여	
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9-2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소래역(예정)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 29-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2을 건물번호로 부여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9-3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소래역(예정)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 29-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3을 건물번호로 부여	
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9-4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소래역(예정)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 29-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4을 건물번호로 부여	
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9-5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소래역(예정)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 29-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5을 건물번호로 부여	
6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9-6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소래역(예정)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 29-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6을 건물번호로 부여	
6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9-8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소래역(예정)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 29-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8을 건물번호로 부여	
7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1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소래역(예정)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 2-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을 건물번호로 부여	
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2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소래역(예정)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 2-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2을 건물번호로 부여	
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3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소래역(예정)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 2-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3을 건물번호로 부여	
7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4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소래역(예정)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 2-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4을 건물번호로 부여	

7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8-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2-1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장도포대지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도로 82-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82-1을건물번호로부여	
7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8-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2-2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장도포대지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도로 82-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82-2을건물번호로부여	
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8-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0-1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장도포대지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도로 80-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80-1을건물번호로부여	
7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8-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0-2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장도포대지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도로 80-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80-2을건물번호로부여	
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8-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0-3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장도포대지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도로 80-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80-3을건물번호로부여	
7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8-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0-4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장도포대지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도로 80-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80-4을건물번호로부여	
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28-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0-5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장도포대지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도로 80-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80-5을건물번호로부여	
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5-1 (만수동)	20091116	장승로 남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승남로 45-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45-1을건물번호로부여	
8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8-1 (만수동)	20091116	장승로 남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승남로 38-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38-1을건물번호로부여	
8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55-1 (간석동)	20090710	인천에서 육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 455-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455-1을건물번호로부여	
8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8-1 (간석동)	20090710	인천에서 육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 358-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358-1을건물번호로부여	
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66-1 (간석동)	20090710	인천에서 육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 266-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266-1을건물번호로부여	
8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9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12-2 (만수동)	20090710	인천에서 육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 212-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212-2을건물번호로부여	
8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25-3 (간석동)	20090710	인천에서 육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 212-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212-3을건물번호로부여	

8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23-2 (간석동)	20090710	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입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 323-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23-2을 건물번호로 부여	
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7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39번길 90-1 (논현동)	2009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239번길 90-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0-1을 건물번호로 부여	
9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0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2-1 (논현동)	20091116	논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고개로123번길 2-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을 건물번호로 부여	
9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9-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7번길 1-1 (만수동)	20091116	만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로37번길 1-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1을 건물번호로 부여	
9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9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101-1 (만수동)	20091116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247번길 101-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1-1을 건물번호로 부여	
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29-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76번길 2-1 (구월동)	20091116	인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인주대로676번길 2-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을 건물번호로 부여	
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9 (논현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9-7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소래역(예정)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 29-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7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65-1 (만수동)	2019.7.30	망실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9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01-1 (만수동)	2019.7.30	망실로 인한 폐지	

기 타

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9-2호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정정고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196호(2004.11.1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남동구 고시 제2012-68호(2012.06.15.)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남동구 고시 제2016-22호(2016.02.29.)로 관리처분인가 되었으며, 남동구 고시 제2019-15호(2019.01.25.)로 준공인가 된 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고시된 조합 고시 제2019-1호 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를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2-862-37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08월 02일

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일원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확정지번 : 간석동 616-6 외 4필지)
 - 나. 면 적 : 24,356.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명칭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일원
 - 나.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61번길 7, 3층(주안동, 삼미빌딩)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6.02.29.
5. 준공인가일 : 2019.01.25.

6. 이전고시 내역

가. 대지 [변경]

구분		위치 (확정지번)		지목	면적(㎡)		비고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전	정정 후	
계					24,356.20	24,356.20	
택지	택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간석동 616-6	간석동 616-6	대지	23,085.70	23,085.70	
정 비 기 반 시 설	도로	간석동 616-120	간석동 616-127	도로	413.00	413.00	
		간석동 616-121	간석동 616-126	도로	482.90	483.50	
		간석동 616-122	간석동 616-125	도로	190.90	190.30	
		간석동 616-123	간석동 616-124	주차장	183.70	183.70	
	주차장	간석동 616-123	간석동 616-124	주차장	183.70	183.70	
	소계				1,270.50	1,270.50	

나. 건축시설

구 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계	비 고
연면적(㎡)	98,197.4565㎡	1,119.598㎡	99,317.0545㎡	
동 수	9	1	10	
층 수	지하2층/지상26층	지상3층		
세대수	643	12	655	

다. 대지 또는 건축시설 분양대상자수

- 1) 조합원분양 : 공동주택 442세대. 근린생활시설 12호
- 2) 일 반 분 양 : 공동주택 192세대
- 3) 임 대 : 공동주택 9세대